# ESG 스타트 매뉴얼



# ESG 스타트 매뉴얼



### 발 간 사

친환경 경영과 사회적 가치 창출, 투명하고 윤리적인 의사결정구조를 일컫는 ESG가 기업가치의 새로운 패러다임이자 지속가능경영의 전제조건으로 부상하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규범이 강화되고, 책임투자원칙이 세계 자본시장과 금융산업을 주도하고 있어서다. 글로벌 선도기업의 공급망 관리가 강화되고 있는 점도 ESG 경영이 불가피한 이유 중 하나다.

지난 6월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는 ESG 정보공개 등 정책과 규제 변화에 가장 직접적 영향을 받게 될 상장기업의 니즈를 고려해 '기업의 ESG 정책 수립 및 지원 등에 관한 포괄적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본서는 그 첫 번째 공동 수행과제 결과물로, 기업주도 ESG 자율경영 기조를 확립하고, ESG 경영에 대한 중견·중소 협력사의 인식 확산과 이행 제고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본서는 크게 네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은 ESG의 개념과 범위, ESG 이슈의 대응 필요성을 설명하였다. 제2장은 기업의 ESG 경영체계 구축 프로세스를 소개하였다. 제3장은 국내외 다양한 평가지표를 분석해 가장 광범위하고 보편적인 내용을 제시한 ISO26000,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GRI,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매트릭스, 그리고 국민연금의 ESG 평가지표와 국내 법령을 반영해 실제 ESG 경영에 필요한 핵심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제4장은 실사에 관한 유일한 국제규범인 OECD 기업책임경영 실사 가이던스의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평가기관 또는 고객사 요구로 실사를시행해야 하는 경우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모쪼록 본서가 ESG 경영을 시작하는 기업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 목 차

제1장 ESG 경영의 이해	5
제1절 ESG의 개념과 범위	7
제2절 ESG 이슈의 대용 필요성	13
제2장 ESG 경영체계 구축 프로세스	29
제1절 비전 및 전략 수립	31
제2절 ESG 경영 인프라 구축	38
제3절 이해관계자 소통체계 확립	42
제3장 ESG 경영의 기본 원칙과 핵심 추진과제	47
제1절 ESG 경영의 기본 원칙	49
제2절 분야별 핵심 추진과제	52
제4장 실사 방안	······ 73
제1절 실사의 필요성과 원칙	75
제2절 실사 과정 및 점검 사항	83
[첨부1] ESG 핵심지표 맵핑	102
[첨부2] ESG 경영에서 갖추어야 할 핵심 정보 목록 ········	103

# 제1장 ESG 경영의 이해



## 제1장 ESG 경영의 이해

### 제1절 ESG의 개념과 범위

### 1 ESG의 개념

- □ 최근 지속가능경영의 핵심 요건이자 기업가치의 새로운 패러 다임으로 ESG가 부상하고 있다. ESG란 기업이 추구해야 할 비재무적 요소로서 친환경(Environment), 사회적 가치(Social), 투명하고 윤리적인 의사결정구조로서의 지배구조(Governance) 를 일컫는 용어다.
- □ ESG가 내포하는 구체적인 목적과 개념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CSR)'과 '기업책임경영(RBC)'의 연장선에서 찾아볼 수 있다. ISO 26000에 따른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이란 기업이 투명하고 윤리적인 의사결정 및 행동을 통해 사회·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책임을 다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기업의 책임은 사회구성원의 건강, 복리후생 등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 이해관계자의 기대를 반영하며, 법과 규범을 준수함은 물론 전사전략으로 내부화하여 모든 사업관계에 적용해야 한다. OECD에서 주창한 기업책임경영(RBC)도 환경, 인권, 노사관계, 소비자권익 등 기업의 책임 있는 사업 관행을 촉구하는 측면에서는 CSR과 개념적으로 유사하지만, 기업의 공급망 관리를 강조하고, 경제·사회·환경에 미치는 기업 활동의 폐해(adverse impacts)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해결하는 폭넓은 활동을 강조한다.

- □ ESG의 궁극적 개념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즉, ESG 요소를 자사는 물론 공급망 내 협력업체 등 관계기업에 이르기까지 의사결정 및 사업 관행으로 반영하고, 그 결과를 적극적으로 공 개하여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와 소통함으로써 스스로 지속가능 경영 능력을 증명하는 일련의 기업 행동을 촉구하는 것이다.
- □ CSR 시대에도 우리 기업들은 오늘날 ESG에 해당하는 사회적 요구를 받았고, 사회로부터 이윤을 창출하는 한 그 사회가 요구하는 바에 부응하는 방식으로 사업 활동을 영위해야 할 기업의 책무는 과거나 현재나 똑같다고 할 수 있다. 다만, ESG가 부각되면서 달라진 점은 전 인류의 공통 과제인 기후변화 위기에 대한 국제사회 컨센서스로 '탄소중립'등 뚜렷한 환경적 목표가부여되고, 이러한 비재무적 성과에 관하여 한층 높은 수준의들을 갖춘 정보공개를 제도적으로 요구받고 있으며, 이것이 곧기업 입장에서는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결정적인수단이 되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 ② ESG의 범위

□ ESG는 기업가치에 중장기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는 점에서 '지속가능성'이란 용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만큼 그 중요 성은 단기적인 재무적 성과보다 어쩌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환경과 사회적 가치 창출이 점점 더 중시되는 패러다임 전환 기에서 ESG는 장기적으로 기업의 생존과 발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기준으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크다.

- □ 그렇다면, ESG의 범위는 과연 어디까지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기업의 ESG 요소를 평가하려는 이해관계자. 특히 투자기관마다 자신들의 투자전략에 부합하는 평가지표를 활용하는 관계로. 적어도 지금까지는 일률적으로 통일된 기준을 설명하기 쉽지 않다. 이 때문에 기업의 ESG 정보를 비교 가능하도록 단순화 하여 자본시장에서 통용되는 기준을 만들고자 하는 움직임이 전 세계적으로 가시화되고 있는 단계이다. 다만, 2020년 9월 세계경제포럼(WEF)이 딜로이트, EY, KPMG, PwC 등 글로벌 회계 · 컨설팅법인과 공동 발표한 보고서 '지속가능 가치 창출을 위한 공통 지표와 일관성 있는 공시를 향한 이해관계자 자본 주의 측정방안(Measuring Stakeholder Capitalism: Towards Common Metrics and Consistent Reporting of Sustainable Value Creation)'을 보면, 대략적이나마 기업 ESG 정보 공시 기준에 관한 최신 흐름을 파악해 볼 수 있다. 동 기준은 2020 년 1월 처음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를 제시한 다보스포럼에 배 경을 두고 있어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매트릭스(Stakeholder Capitalism Metrics)'라 불린다.
- □ 동 보고서의 핵심내용은 ESG 범주를 지배구조, 지구, 사람, 번영 등 4가지 축(pillar)으로 구분하여 21개 핵심지표와 34개 확장 지표를 담고 있다. 핵심지표는 많은 기업들이 이미 공시하고 있는 정량적 측정기준이며, 확장지표는 아직 관행으로 확립되지는 않았지만, 공급망 등에 대해 보다 정교한 방법으로 ESG 개선 성과를 측정하는 데 유용한 기준이 될 것으로 세계경제 포럼(WEF)은 밝히고 있다. ESG와 관련해 세계경제포럼(WEF)이 제시한 21개 핵심지표와 각 지표별로 기업들이 공개해야 할

세부정보는 〈표 1〉과 같다.

#### <표 1>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매트릭스에 의한 핵심지표와 공시사항

#### ▶ 지배구조 원칙(Principles of Governance)

- 기업의 목적(purpose) : 주주를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 가치 창출을 위한 기업의 명시적 목적
- 지배구조의 질(quality): 최고 거버넌스 기구(이사회) 및 위원회 구성과 관련, 경제·환경·사회 이슈에 대한 역량, 상근 또는 비상근, 독립성, 임기, 개인별 겸임 현황과 겸임 업무의 성격, 성별, 사회적 소수집단의 구성원, 이해관계자 대표성
- 이해관계자 관여 : 핵심 이해관계자 및 기업에 중대 영향을 주는 이슈 목록과 해당 이슈의 식별 및 이해관계자 관여 방안
- 윤리적 행동(뇌물방지): 사내 뇌물방지 교육을 이수한 이사, 근로자, 협력업체 및 사업관계자 비율, 뇌물수수 발생 건수와 개요, 사내 반부패 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과 이해관계자 참여방안
- **윤리적 행동(내외부 자문·보고체계)** : 윤리적·합법적 행동 및 조직 청렴성에 대해 자문하고 관련 사건을 보고할 수 있는 내·외부 장치
- 위험 및 기회 요인에 대한 감시 : 기후변화와 정보보호를 포함, 경제·환경 ·사회 이슈 관련 주요 위험 및 기회 요인

#### ▶ 지구(Planet)

- 기후변화(온실가스 배출):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불화가스 등 모든 관련 온실가스에 대한 Scope 1, Scope 2 배출량(가능하면 Scope 3 배출량 까지 공개)
- 기후변화(TCFD 권고 이행): 기후관련 재무공시에 필요한 준비시한으로 최대 3년을 제시하고,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파리협정 목표와 연계하여 수립한 배출량 목표 또는 검토 여부
- **자연훼손**: 보호구역 또는 생물다양성 구역에 인접하여 소유·임대·관리 중인 사업부지 수와 면적(ha)
- **물 이용**: 세계자원연구소(WRI) '물자원 리스크 지도(Aqueduct Water Risk Atlas)'상 물 부족 지역에서의 물 소비량취수량(ML) 및 그 비율

#### ▶ 사람(People)

- **존엄과 평등(다양성과 포용성)** : 근로자 유형별, 연령, 성별, 기타 다양성 지표(예: 민족)에 따른 근로자 비중(%)
- **존엄과 평등(급여 평등)** : 남녀, 소수·다수민족 간 기본 급여 및 보상 격차(%)
- **존엄과 평등(임금수준)** : 최저임금 대비 성별 표준 입직단계 임금 비율(%), CEO를 제외한 모든 근로자의 연봉 중위값 대비 CEO 연봉 비율(%)
- **존엄과 평등(아동근로·강제근로 리스크)** : 아동근로 또는 강제근로 발생 위험이 높은 사업운영 및 공급업체에 대한 해명
- 건강과 웰빙 : 업무관련 사망자 수와 비율, 업무관련 부상 건수 및 유형, 근로시간, 의료서비스 이용 방법과 근로자에 허용되는 의료서비스 범위에 대한 설명
- 미래를 위한 스킬 : 종업원 1인당 연평균 교육훈련 시간 및 지출비용(성별, 근로자 유형별 수치도 공개)

#### ▶ 번영(Prosperity)

- 고용 및 부의 창출(종업원 수와 고용률) : 연간 신규채용 근로자와 이직자 의 수 및 비율(연령별, 성별, 지역별, 기타 다양성 지표별)
- 고용 및 부의 창출(경제적 기여): 매출액, 운영비, 임금, 수당, 이자비용, 조세, 사회공헌 등 글로벌 조직 운영으로 창출·분배된 직접적인 경제적 가치(EVG&D), 정부의 재정지원액
- 고용 및 부의 창출(금융투자 기여) : 자사의 투자전략에 따른 순자본지출 (총자본지출에서 감가상각을 뺀 값), 자사의 주주자본수익률 전략에 따른 자사주 매입 및 배당급 지급액
- 더 나은 상품과 서비스를 위한 혁신 : 연구·개발에 투자한 총비용
- 지역사회 활력: 소득세, 재산세, 비공제 부가가치세, 판매세, 급여세 등 기업 이 세계 각국에서 납부한 총 조세액과 세목별 납부액
- □ 오늘날 ESG와 관련한 여러 국제 이니셔티브의 발전 과정과 일반적으로 알려진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의 ESG 평가기준을

종합하여 각 부문별 하위 요소를 살펴보면, 먼저 환경 측면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기후변화와 그에 따른 탄소배출 관련이슈이다. 전 세계 인류의 번영과 생존을 위해 앞으로 기업은 과감한 탄소배출 절감, 한발 더 나아가 탄소중립을 추구해야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와 함께 환경오염 완화를 위한 자원 및 폐기물 관리, 에너지 및 자원 소모량을 감축하기 위한에너지 효율화, 멸종 위기에 처한 동식물을 복원하기 위한생물다양성 문제도 중요 환경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사회적 가치측면에서는 기업의 인권 보장과 근로자 안전 확보, 차별 해소, 다양성 존중, 데이터 보호, 지역사회와의 협력관계 구축 등이중요 요소로 평가받고 있다. 마지막으로 지배구조 측면에서는 앞서 언급한 환경과 사회적 가치를 투명하고 윤리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실현할 수 있도록 신뢰도 높은 이사회 구성과 감사위원회 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뇌물공여와 부패 방지를 위한통제장치 마련도 지배구조의 핵심적 하위 요소에 해당한다.

<표 2> ESG의 범위

분야		세부 요소
환경 (E)	<ul><li>기후변화 및 탄소배출</li><li>에너지 효율성</li><li>환경영향 관리</li></ul>	<ul><li> 자원 및 폐기물 관리</li><li> 생물 다양성</li><li> 환경정보 공시 등</li></ul>
사회 (S)	<ul><li>인권, 성별 및 다양성</li><li>제품·서비스 책임</li><li>데이터 보호</li></ul>	• 근로자 안전·보건 • 공급망 관리 • 사회공헌 등
지배구조 (G)	이사회 구성 및 운영     준법감시     뇌물 및 부패 방지	<ul><li> 감사위원회 구축</li><li> 기업윤리</li><li> 공정경쟁 등</li></ul>

### 제2절 ESG 이슈의 대유 필요성

## ① 규제 강화

□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토대로 ESG가 부상한 과정을 살펴보면, 기후변화와 같이 전 인류가 공동으로 직면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 행동'을 촉구하는 다자간 협약 등 국제규범이 대폭 강화되면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각국 정부도 그에 수반된 책임을 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표 3> ESG 관련 국제규범

규범	주요 내용
글로벌 콤팩트 (2000)	•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관련 10대 원칙 수립 • 기업의 자발적 참여 및 준수 권고
UN PRI (2006)	• ESG 요소를 고려한 책임투자 이행, 적극적 기업관여, 투자대상 기업에 대한 정보공개 요구, 위탁운용사에 대한 책임투자 동참 요구, 협업, 결과보고 등 책임투자 6개 원칙 제시
ISO 26000 (2010)	• 사회적 책임 활동 추진을 위한 거버넌스, 인권, 노동, 환경, 공정운영, 소비자 보호, 지역사회 발전 등 7개 핵심영역별 권고사항 실천 촉구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2012)	• 인권, 노동, 환경, 뇌물방지, 소비자 보호, 정보공개 등 11개 분야 기업윤리 권고
UN SDGs (2015)	• 인간, 지구, 번영, 평화, 파트너십 등 5개 영역에 걸쳐 인류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 17개 목표(청정에너지, 지속가능 발전, 기후변화 등) 및 169개 세부목표 제시
파리기후협약 (2015)	<ul> <li>2010년 대비 2030년 탄소배출량 45% 이상 감축 촉구</li> <li>2050년 탄소중립 달성 목표 제시</li> <li>선진국-개도국 간 차등적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보고의무 부여</li> </ul>
TCFD 권고안 (2017)	<ul> <li>기업이 기후변화 관련 위험과 기회요인을 파악하고, 재무적 영향을 투명하게 공시하도록 유도</li> <li>지배구조, 전략, 위험관리, 지표·목표치 등 4개 공개항목 권고</li> </ul>

- □ 국제사회에서 처음 '지속가능성'이 주요 의제로 등장한 것은 1987년 유엔환경계획(UNEP)와 세계환경개발위원회(WCED)가 함께 채택한 '우리들 공동의 미래(Our Common Future)'라는 보고서였다. UN 브룬트란트 위원회가 발표한 보고서로, 일명 브룬트란트 보고서(Brundtland Report)로도 불린다. 보고서는 미래 세대에 필요한 자원과 잠재력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현세대의 수요을 지속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발전을 '지속가능발전'으로 정의하고 있다. 인류가 빈곤, 인구증가, 지구온난화, 환경파괴 등의 위기에 직면해 앞으로 대재앙이나 파국을 맞이하지 않고도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지속가능 발전'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 □ 이후 지속가능성 화두는 비영리단체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에 의해 기업의 자발적인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단계로 발전하였다. GRI는 2000년 첫 가이드라인 발표 후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쳐 2016년 GRI 표준(GRI Standards)을 정립했다. 현재 이 표준은 경제, 환경, 사회 부문에 걸쳐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평가지표를 제시하여 전 세계 기업들이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여 공시하는 데 기본적인 틀로 활용되고 있다.
- □ 여기에 기후변화가 당장 기업에 직접적인 위기가 될 수 있다는 경고가 확산되면서 기업의 정보공개를 더욱 중요하게 만든 것이 바로 2017년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공개 전담반(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olosures; TCFD)'이 발표한 권고안이다. 2015년 G20 금융안정위원회(FSB)가 설립한 TCFD는

기후변화로 인한 기업의 자산손실과 투자자 및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정보공개가 필수라는 판단에 따라 기업들이 기 후변화와 관련한 위험과 기회가 자사의 재무적 상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지배구조, 전략, 리스크 관리, 지표 및 목표치 등 4가지 요소를 공개하도록 권고하였다.

<표 4> TCFD가 제시한 기후변화의 위험과 기회 및 재무적 영향

유형		형	<sup>2</sup> 요 내용	재무적 영향
		정책법률		• 규제 준수를 위한 비용 및 보험료 증가 • 소송 및 벌금에 따른 비용 증가
		기술	• 저탄소 제품서비스 대체 • 신규 기술 투자 실패	<ul> <li>신기술 R&amp;D 지출 증가</li> <li>기존 자산 평가 절하</li> <li>신규 프로세스 도입 비용 증가</li> </ul>
마 선	전 환	시장	<ul><li>소비자 행동 변화</li><li>시장 변동성 증가</li><li>원자재 가격 변동성 증가</li></ul>	소비자 선호도 변화에 따른 수요 감소     에너지, 물 가격 변동 및 폐기물 처리에 따른 생산비용 증가     원자재 비용 증가     수익 믹스의 변화
		평판	• 소비자 선호도 변화 • 이해관계자 평가 증가	• 평판 악회에 의한 매출 감소 • 인력수급 및 조달 치질에 의한 수익 감소 • 자본조달 감소
	물	급성	• 태풍, 홍수 등 자연재해	• 생산능력 저하에 따른 수익 감소
	리 적	만성	• 평균 온도 및 해수면 상승	<ul><li>설비 손상 등에 따른 자본비용 증가</li><li>고위험 지역 자산에 대한 보험료 증가</li></ul>
7	회	자원 효율성	고효율 교통수단 사용      고효율 생산유통절차 확보      자원의 재사용      고효율 사옥으로의 이주      물 사용 및 소비랑 감소	<ul> <li>운영비용 감소</li> <li>생산능력 제고에 따른 수익 증가</li> <li>건물 등 고정자산의 가치 상승</li> <li>안정적 인력관리, 안잔보건 확보 등에 따른 인건비 절감</li> </ul>

	에너지 지원 • 저탄소 에너지 사용 • 정책지원자금 활용 • 신기술 활용 • 탄소시장 참여 • 에너지 수급 다변화		운영비용 감소     화석연료 가격 상승에 대한 비용 회피     온실가스 배출에 따른 제반비용 감소     제반소 기술에 대한 투자수익률 상승     투자자 증가로 인한 원활한 자본조달     평판 제고에 따른 제품서비스 수요 증가
기회	제품 세스	저탄소 신제품서비스 확대     사업 다변화 역량 확보     소비자 선호도 제고	• 저탄소 제품서비스 수요에 따른 매출 증대 • 경쟁우위 확보를 통한 수익 증대
	시장	• 신규시장 창출 • 공공부문 인센티브 활용	• 신규시장 참여 통한 매출 증대 • 녹색채권 발행 등 금융자산 다각화
	회복력	• 재생에너지 프로그램 참여 • 자원 대체 및 다각화	• 토지, 건물, 인프라 시장가치 증대 • 공급망의 신뢰성 향상

<표 5> TCFD 권고안 4가지 주요 공개항목

항목	공개 내용
지배구조	기후변화에 따른 위험과 기회요인을 관리·감독하는
(Governance)	이사회 및 경영진 역할
전략	단/중/장기 기후변화 관련 위험 및 기회가 경영·재무
(Strategy)	계획에 미치는 영향
리스크 관리	기후변화에 따른 위험을 식별·평가·관리하기 위한
(Risk Management)	절차 및 리스크 관리 시스템 통합 방법
지표 및 목표치	기후변화 관련 위험과 기회를 평가·관리하기 위한
(Metrics and Targets)	지표와 목표치 및 성과

□ 이러한 국제사회의 논의 진전으로 인해 그간 자율공시의 영역이었던 기업의 ESG 정보 공개를 점차 의무공시로 전환하는 법적 규제가 속속 도입되고 있다. 2018년 유럽연합(EU)이 ▲ 근로자 500인 이상, ▲자산총계 2천만 유로 초과, ▲수익 4천

만 유로 초과 중 2가지를 충족하는 사업장에 대해 ESG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등 2020년 기준 84개 국가가 ESG 관련 정보공개제도를 도입한 상황이다.<sup>1)</sup>

- □ 우리나라도 ESG 현황을 담은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공시를 2025년부터 일정 규모 이상(예: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 장사에 의무화하는 것을 시작으로 2030년에는 전체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²) 금융위원회는 이를 위해 2021년 1월 한국거래소를 통해 ESG 정보공개 가이던스를 제 정하여 발표하였고, 향후에는 이해관계자가 기업의 ESG 현황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기업지배구조보고서'와 환경 및 사회적 책임 활동에 관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통합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 □ 정보공개 규제와 함께 기업의 자발적 실사도 점차 의무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2018년 OECD가 글로벌 공급망의 ESG 관리 필요성을 제기하며 '기업책임경영 실사 가이던스(Due Diligence Guidance for Responsible Business Conduct)'를 회원국 만장일치로 채택하면서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해당 가이던스는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이 규정하고 있는 인권, 노동, 환경, 뇌물방지, 소비자 보호, 정보공개 등 11개 핵심영역에 걸친 권고사항을 기업이 자사의 경영정책에 반영하는 것은 물론, 공급망 내 협력업체의 준수 여부까지 자발적 실사를 통해 관리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sup>1)</sup> 기재부, ESG 인프라 확충 방안, 2021.8.26

<sup>2)</sup> 금융위원회, 기업공시제도 종합 개선방안, 2021.1.14

□ 가이던스가 채택되자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발 빠르게 기업의 자발적인 인권·환경 실사를 의무화하는 법률 제정을 추진하기 시작해 올해 입법을 목전에 두고 있다. 해당 법률은 기업에 대해 자사와 공급망 내 협력업체에 이르기까지 인권·환경 침해 여부를 확인·보고·개선하기 위한 실사를 의무화하고, 위반 시 벌금 또는 피해보상 책임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는 EU 역내 소재 기업뿐만 아니라 EU 시장에 진출한 우리 기업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즉각적이면서 철저한 대비가 요구된다.

## ② 세계 자본시장과 금융업계의 ESG 투자기준 정착

- □ 2000년대 들어 글로벌 콤팩트, ISO 26000,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등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에 해당하는 다양한 행동 준칙이 발표되면서, 투자 및 자산운용 분야에서도 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감안한 사회책임투자(Social Responsible Investment) 개념이 확산되기 시작했다.
- □ 2006년에는 UN 차원에서 사회책임투자 개념을 구체화한 '책임 투자원칙(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 PRI)'이 세계 자본시장과 금융산업을 주도하는 이니셔티브로 정착되면서, ESG 요소를 투자 결정에 반영하는 기관투자자가 증가하였고, 이 때부터 ESG라는 용어가 대중에 일반화되기 시작했다.
- □ 2006년 UN PRI 출범 당시만 해도 서명기관은 63개에 자산규모는 6.5조 달러 수준이었으나, 2020년 11월 현재는 연기금, 자산운용사, 의결권 자문기관 등 서비스 공급자를 포함해

3,559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들 자산규모는 약 103조 달러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다.

<표 6> UN PRI 서명기관이 준수해야 할 6대 원칙

① 책임투자 이행	투자 분석 및 의사결정 과정에 ESG 이슈가 포함 되도록 한다.
② 적극적 기업관여 행사	주주권 보호에 관한 정책과 주주권 행사에 ESG 이슈가 반영되도록 한다
③ 정보 공개	투자대상 기업에 ESG 이슈에 관한 적절한 정보 공개를 요구한다.
④ 업계 책임투자 확산	위탁운용사에 책임투자원칙의 수용과 이행을 요구 한다.
⑤ 협업	책임투자원칙의 실행효과를 높이기 위해 상호 협력한다
⑥ 결과 보고	책임투자원칙 실행에 관한 활동 및 이행 상황을 보고한다.

□ UN PRI에 참여하는 금융·투자기관들은 환경 및 사회 문제해결과 투자대상 기업의 지속가능성 향상을 목적으로 ESG를 투자 결정의 중요 요소로 고려해야 한다. 실제로 연기금과 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자들은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등을 위하여일제히 스튜어드십 코드를 강화하고, 다양한 성격의 책임투자전략을 실행하고 있다. 글로벌 신용평가사들도 ESG 요소를 신용평가에 반영하는 추세가 뚜렷해지고 있다. 이제는 기업들이안정적 투자 유치를 위해서라도 ESG 요소를 경영시스템으로통합 관리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 □ 특히 기금 규모가 거대화되면서 안정적 장기 운용수익 확보가 최우선 과제로 부상한 글로벌 연기금들은 기업의 ESG 요소가 투자 포트폴리오 성과와 위험 분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 기업관여(Engagement)와 투자배제(Negative Screening)를 적극 추진한다. 기업관여는 투자대상 기업 경영진과의 비공개 대화뿐만 아니라, 공개적이고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주주로서 의사를 관철시키는 행위 전반을 포괄한다. 네거티브 스크리닝은 특정 ESG 기준을 토대로 부정적으로 평가되는 산업과 기업을 포트폴리오나 펀드 구성에서 배제하는 투자전략을 말한다.
- □ 2021년 3월 말 기준 자산규모 2,061조원으로 세계 최대 연기 금인 일본 GPIF는 주로 위탁운용사를 통해 책임투자원칙을 실행한다. GPIF는 2004년 「연금적립금관리운용독립행정법인법」 제정 당시부터 민간부문 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여 직접투자를 금지함에 따라 기금운용과 의결권 행사 등을 위탁운용사에 전면 위임하고 있다. 직접투자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외부 자산운용사와 기업관여 관련 대화 및 토의를 통해 책임투자를 독려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반면에 GPIF는 기업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의결권 행사를 통한 장기 수익률 제고를수탁자 책임의 핵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주주권 행사를 포기함으로써 기업의 ESG 개선 기회를 놓치게 되는 투자배제는 적극적으로 시행하지 않는 특징이 있다.
- □ 2021년 3월 기준 자산규모 1,470조원으로 세계 2대 연기금인 노르웨이 GPFG는 기금운용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중시해 단순 하고 보수적인 투자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1990년 설립 초기

만 해도 채권에만 투자하다가, 자산규모와 투자경험이 축적된 2010년부터 주식과 부동산에도 투자를 늘리기 시작해 2020년 말 기준 주식 72.8%, 채권 24.7%, 부동산 2,5%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다. GPFG는 재무부 방침에 따라 주로 기후변화, 대량살상무기, 담배 관련 기업에 대하여 투자배제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책임투자원칙을 실천하고 있다. 실제로 2017년 3월에는 전력 생산량의 30% 이상을 석탄에 의존한다는 이유로 한국전력에 대해 투자철회를 결정하기도 했다.

- □ 2021년 7월 기준 자산규모 733조원으로 우리나라 국민연금에 이어 세계 4대 연기금으로 손꼽히는 네덜란드 ABP는 의결권 행사, 경영진과의 대화 등 기업관여와 함께 대량살상무기 관련 국제조약과 UN 글로벌 콤팩트 위반 기업에 대해 투자배제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책임투자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책임투자 규모만 2016년 290억 유로에서 2020년 580억 유로(한화 약80조원)로, 4년 만에 두 배가 확대되었다. 다만, ABP는 책임투자 시에도 수익률을 중시해 ESG팀과 포트폴리오 매니저가 항상 협업하는 구조로 자금을 운용하는 특징이 있다.
- □ 2021년 말 기준 자산규모 573조원을 달성한 미국 캘리포니아 공무원연금(CalPERS)은 1980년대 후반부터 기업과의 비공식 대화, 서한 발송, 컨퍼런스콜, ESG 리서치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적극적인 주주활동에 나서고 있다. 1984년 기업지배구조 관련 투자지침을 수립한 CalPERS는 현재 지배구조 문제로만 분기당 평균 10~14%에 이르는 반대의결권을 행사하고 있다. 2011년에는 0.25%의 지분을 갖고도 당시 주주 한 명의 찬성

만으로도 이사를 선임할 수 있었던 애플에 주주제안을 통해 주주 과반수가 찬성해야 이사 선임이 가능한 '다수결의제'도 입을 관철시킨 바 있다. 2007년 이전에는 국가 단위 투자배제 리스트를 운영하였으나, 수익률 및 효율성 악화 요인으로 지목 되면서 이후부터는 환경 분야에 집중해 석탄채굴 또는 발전 관련 개별기업을 대상으로 투자배제를 결정하고 있다.

□ 2021년 6월 기준 자산규모 481조원인 캐나다 CPP는 기후변화, 물, 석탄채굴 등 환경 분야와 경영자 보상 등 지배구조 요소를 중심으로 기업관여와 의결권 행사 등 책임투자 활동을 실천하고 있다. 반면, 수익률 감소와 위험 증가를 이유로 법령으로 정한 투자금지 분야 외에는 투자배제를 선호하지 않는 편이다.

<표 7> 해외 주요 연기금이 준수하는 투자배제 관련 조약 현황

ī	분	GPFG	ABP	CPP	CalPERS	국제조약
	화학 무기	0	0			화학무기의 개발, 생산 및 비축 금 지와 그 폐기에 관한 협약
	핵무기	0	0			핵무기 비확산에 관한 조약
대량 살상 무기	생화학 무기	0	0			세균무기 및 독소무기의 개발, 생산, 비축 금지와 그 폐기에 관한 협약
1.71	집속탄	0	0	0		집속탄 금지 협약
	대인 지뢰	0	0	0		대인지뢰 금지협약 (오타와 협약)
기후	석탄 채굴	0			0	UN 기후변화 협약
변화	석탄 발전	0			0	UN 기후변화 협약
건강	담배	0	0			WHO 담배규제 기본협약

- □ 2021년 6월 기준 자산규모 908조원으로, 세계 3대 연기금의 입지를 확고히 하고 있는 국민연금은 2009년 UN PRI 가입이후 책임투자팀 신설(2013년), 책임투자 가상펀드 운용(2014년), 책임투자 지표 개발 및 기업 ESG 평가 기준 마련(2015년), 국내주식 직접운용분에 대한 ESG 고려 적용(2017년), 수탁자 책임원칙(스튜어드십 코드) 도입(2018년), 책임투자 원칙 도입(2019년) 등 책임투자 기반을 꾸준히 조성해 왔다.
- □ 2006년 900억원 규모의 책임투자펀드 위탁운용사 모집으로 시작한 국민연금의 공식적인 책임투자 규모는 2019년 직접운 용분을 포함 32.2조원으로 급성장하였으나, 같은 해「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이 도입되면서, 사실상 국내주식 투자액 전부(184.3조원, '21.6월)가 ESG 고려 대상이라 볼 수 있다.
- □ 2019년 도입되어 2021년 3월 한 차례 개정을 거친 「적극적주우활동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보면, 우선 ▲기업 배당정책수립, ▲임원 보수한도 적정성, ▲법령 위반 우려로 기업가치훼손 내지 주주권익 침해 사안, ▲국민연금의 지속적인 반대의결권 행사에도 개선이 없는 사안, ▲정기 ESG 평가³)에서 2등급 이상 하락하여 C등급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등 5가지를 '중점관리사안'으로 규정하고, 특정 기업이 이에 해당할 경우 ① 비공개 대화 기업 선정 → ② 비공개 중점관리기업 선정

<sup>3)</sup> 국민연금은 국내주식 직접운용분 약 900개사(코스피 상장기업 800개사, 코스닥 상장기업 100개사)를 대상으로 연 2회 ESG 정기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AA, A, BB, B, C, D 등 6개 등급)를 투자가능종목군(IU) 신규편입 및 투자종목점검 등 투자의사결정 과정에 고려하는 한편, 중점관리사안 및 예상하지 못한 우려 사안에 해당하는 경우 기업관여 주주활동과 연계되도록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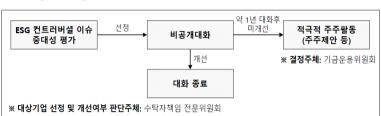
→ ③ 공개 중점관리기업 선정 → ④ 주주제안 순으로 기업관 여 절차를 행사하도록 규정하였다. 절차는 각 단계마다 최소 1년이 소요되며, 중간에라도 기업 개선이 확인되면, 그 즉시 기업관여는 종료된다.

<표 8> 국민연금의 주주활동 대상이 되는 중점관리사안

중점관리사안	주주활동 대상기업 선정기준
기업 배당정책 수립	합리적인 배당정책을 수립하지 않거나, 합리적인 배당 정책에 따른 배당을 하지 않을 경우
임원 보수한도 적정성	보수금액, 기업의 경영성과 등과 연계되지 않은 이사 보수한도를 제안하여 주주권익을 침해하는 경우
법령 위반 우려로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가치 침해 사안	국가기관 조사 등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 아래 경우에 해당할 경우  • 당해 회사와 관련한 횡령, 배임 행위  •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부당지원행위)  •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 (경영진의 사익편취)
지속적인 반대의결권 행사에도 개선이 없는 사안	회사의 주주총회 안건 중 국민연금이 지속적으로 반대 의사 표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는 안건이 있는 경우
정기 ESG 평가결과가 하락한 사안	정기 ESG 평가결과, 종합 ESG 등급이 2등급 이상 하락하여 C등급 이하에 해당할 경우

□ 한편, 동 가이드라인은 ESG와 관련하여 예상하지 못한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익 침해 우려가 발생한 경우를 '예상하지 못한 우려 사안'으로 규정하고, 특정 기업에 ESG 관련 쟁점이슈 (Controversial Issues)가 발생한 경우 중대성 평가를 거쳐 주주

활동 대상기업으로 선정하게 되면, 비공개 대화에 이어 곧바로 주주제안을 할 수 있도록 기업관여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였다.



[그림 1] 예상하지 못한 우려 사안 관련 주주활동 절차

- □ 2021년은 기업 ESG 이슈와 관련해 국민연금이 처음으로 특정 기업에 대해 이사 선임 주주제안 여부를 공식 검토하는 단계까지 발전했다. 제1차 기금운용위원회(1.29)에서 노동계와 지역가입자를 대표하는 일부 위원들이 KB금융,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포스코, CJ대한통운, 삼성물산 등 7개기업을 대상으로 사외이사 추천 주주제안 필요성을 언급한 데따른 것이다. 일부 정치권에서도 이들의 주장에 동조하면서, 한때 국민연금의 운용독립성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했다. 그러나 기금운용위원회 산하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에서 주주제안 가능성을 검토한 결과,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이 정한 순차적 기업관여 절차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시점상으로 정기주총 6주전 주주제안 제출이 어렵다는 현실적 이유로 실제주주제안은 무산되었다.
- □ 글로벌 연기금 외에 블랙록(BlackRock), 뱅가드(Vanguard), 스테이트 스트리트(State Stree) 등 글로벌 투자기관들도 지속 가능 투자의 전제 조건으로 기업의 ESG 요소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 특히 2020년 말 기준 자산 규모가 8조 6,766억 달러(한화 약 1경 253조원)에 달하는 세계최대 사모펀드인 블랙록은 매년 기업 CEO에게 연례서한을 발송해 지속가능성 관련 공시를 확대하고 기후변화 대응 노력 강화를 주문한다. 엑슨모빌과 스탠다드 차타드 등 지금까지수많은 글로벌 기업에 대해 환경 분야 개선 노력이 미흡함을이유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는 것과도 무관하지 않다. 실제로 세계 최대 에너지기업 엑슨모빌은 2021년 5월 열린 정기주총에서 보유지분이 0.02%에 불과한 친환경행동주의 펀드 '엔진1호(Engine No.1)'가 추천한 2명의 이사선임 주주제안이 블랙록의 지지로 가결되면서 이사 교체라는 진통까지 겪어야 했다.

### ③ 선도기업의 공급망 관리 강화

□ 기업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기업들이 ESG 요소를 관리해야 할 또 다른 이유가 바로 글로벌 선도기업 등 원청회사의 공급망관리(Supply Chain Management; SCM)가 점점 더 강화되고있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한 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연내 입법화할 예정인 기업의 인권·환경 실사 의무화 법안도일정 규모 이상 기업의 경우 자사와 공급망 내 관계기업에 이르는 가치사슬 전반에 대한 자발적 실사를 통해 ESG 요소의검증과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ESG 요소를 중심으로 공급망관기가 확대되는 것은 글로벌 공급망의 지속가능성 이슈가 사업활동에 직·간접적 영향을 주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그만큼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 이와 같은 변화는 2019년 8월 애플, 아마존, 월마트, 블랙록 등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기업 CEO가 참여한 가운데 개최된 BRT(Business Roundtable) 연례회의에서 주주 우선 원칙을 폐기하고, 모든 이해관계자의 가치를 통합하는 '기업 목적(Purpose of a Corporation)'을 새롭게 선언한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181명의 글로벌 기업 CEO가 서명한 선언은 과거 주주(Shareholder)를 최우선시하던 데에서 이제는 고객, 직원, 공급자, 지역사회, 주주 등 이해관계자(Stakeholder)의 가치를 모두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림 2] 2019년 Business Roundtable 선언문



The Statement on the Purpose of a Corporation reflected the view of our members that to succeed and profit over the long term, they need to consider the interests of all of their stakeholders – invest in their employees, keep the trust of their customers, partner with their suppliers and be a good member of their communities – all to ensure that their enterprises flourish far into the future. The best modern CEOs have been running their companies in this way for a long time; they signed the Statement as a better public articulation of their long-term focused approach and as a way of challenging themselves to do more."

#### **IOSHUA BOLTEN**

President & CEO, Business Roundtable

- □ 실제로 최근 글로벌 기업들은 ESG 요소를 중심으로 협력업체를 선정하거나, 공급망 내 협력업체에 인권 및 환경 요소에 대한 정보를 요청해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개선할 것을 요구하는 등 자사와 연결된 공급망 관리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 □ 애플의 경우 모든 공급망 내 협력업체에 대해 노동권, 인권, 환경보고 등의 행동수칙을 마련해 이를 평가에 반영하고 있으며, 전 세계 70곳 이상 협력업체와 애플 제품 생산에 100%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독일 대표 화학기업 바스프는 공급업체 행동수칙을 제정해 준수토록 하고 있다. 또한 바이엘, 헨켈, 솔베이와 함께 화학산업계 공동 이니셔티브인 'TfS(Together for Sustainability)'를 설립, 공동의 행동강령과 리스크 기반 매트릭스를 개발해 협력업체 ESG 평가와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인텔은 콩고민주공화국과 그 인접국가의 광물 공급망 관리를 통해 아동근로와 범법단체 자금유입을 차단하고자 전 세계 24개국 116개 제련소 및 정제시설을 방문하여 분쟁광물 교육을 실시하고, 광물 원산지 보증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네슬레는 '팜유 공급업체의 인권에 관한 행동 계획'을 발표하고, 2020년 전 세계 86개국 450개 팜유 공장에 대해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였다.

## 제2장

## ESG 경영체계 구축 프로세스



## 제2장 ESG 경영체계 구축 프로세스

### 제1절 비전 및 전략 수립

#### ① 대내외 ESG 리스크 및 ESG 역량 평가

- □ 기업이 ESG 경영을 위해 가장 먼저 실행해야 할 것은 ESG를 고려한 기업 비전체계를 새롭게 수립하는 것이다. 자사에 맞는 ESG 비전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ESG 관련 리스크와 자사의 ESG 경영 역량에 대한 자체 진단과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
- □ 우선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 분야별로 자사의 운영 또는 공급망 내 협력업체 등에서 이미 발생하였거나 향후 발생가능한 리스크를 식별하고, 해당 리스크로부터 야기되는 부정적 영향 (adverse impacts)과 관련하여 개선 목표와 달성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도록 한다. 리스크 분야를 자체적으로 식별하기 어렵다면, 현재까지 소개되어 있는 국내외 ESG 이니셔티 브나 평가기관의 평가항목을 참조(p.96)해 보는 것도 방법이다. 업종별 특화된 평가항목을 찾는다면, 지속가능회계기준위원회 (Sustainability Accounting Standards Board; SASA) 중대성 지도(Materiality Map)를 참고할 만하다. 중대성 지도는 기업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지속가능성 관련 항목을 26개로 분류하고, 각 산업별로 중대성 여부를 색상으로 표시하고 있다. 짙은 색상일수록 관련 항목이 해당 산업에서 중대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 [그림 3] SASB의 중대성 지도 예시

		Consumer Goods	Extractives & Minerals Processing	Financials	Food & Beverage
Dimension	General Issue Category ①	Click to expand	Click to expand	Click to expand	Click to expand
Environment	GHG Emissions				
	Air Quality				
	Energy Management				
	Water & Wastewater Management				
	Waste & Hazardous Materials Management				
	Ecological Impacts				
Social Capital	Human Rights & Community Relations				
	Customer Privacy				
	Data Security				
	Access & Affordability				
	Product Quality & Safety				
	Customer Welfare				
	Selling Practices & Product Labeling				
	Labor Practices				
Human Capital	Employee Health & Safety				
	Employee Engagement, Diversity & Inclusion				
Business Model & Innovation	Product Design & Lifecycle Management				
	Business Model Resilience				
	Supply Chain Management				
	Materials Sourcing & Efficiency				
	Physical Impacts of Climate Change				
	Business Ethics				
	Competitive Behavior				
Leadership & Governance	Management of the Legal & Regulatory Environment				
GOVERNBINE	Critical Incident Risk Management				
	Systemic Risk Management				

- □ 이외에 동종업계에서 MSCI, S&P,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 등 ESG 평가기관으로부터 우수 평가를 받은 기업의 지속가능 경영보고서나 관련 공시 내용을 확인하여 자사에 적합한 평가 항목을 도출해 볼 수도 있다.
- □ 대내외 ESG 리스크와 자사의 ESG 경영 역량을 진단·평가할 때는 가급적 객관화된 수치나 등급으로 표기함으로써 현 상황과 향후 개선상황을 비교하도록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진단·평가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해야 한다. 관대한 평가 결과는 새로운 비전 수립에 방해가 된다. 초기 진단·평가는 이해관계 자에게 공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 기업이 장기간에 걸쳐 실행할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선행과정이다. 객관적 평가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으로부터 컨설팅을 받는 것도 방법이나, 기업 내 여러 부서나 구성원이 참여하는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하여 다각적으로 평가하는 것도 효율적인 방법이다.

#### ② ESG 비전 수립

□ 기존 비전의 검토, 대내외 ESG 리스크 및 ESG 경영 역량에 대한 평가 결과를 토대로 기업 전반에 내재화하고자 하는 장기적인 기업 비전을 수립한다. ESG를 고려한 새로운 기업 비전은 향후 경영목표와 세부전략의 토대가 될 기본적인 경영철학이되다.

<표 9> 주요 기업의 ESG 비전 사례

기업명	비전		
현대자동차	휴머니티를 항한 진보(Progress for Humanity)		
SK이노베이션	Global ESG Management Leader		
LG에너지솔루션	We CHARGE toward a better future		
포스코	더불어 함께 발전하는 기업시민		
LS전선	지속가능한 미래를 선도하는 No.1 친환경 케이블 솔루션		
현대건설	인류를 위한 지속가능 터전 창조		

□ 새로운 기업 비전은 자사의 사업내용과 환경, 사회, 지배구조 각 측면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고려해 설정한다. 비전은 기 업의 존재 이유를 나타내는 만큼 구성원과 이해관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한다.

#### ③ ESG 경영목표 수립

□ ESG 경영목표는 ESG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각 분야별 달성 목표를 표시한다. 예를 들면, 환경(E) 영역에서는 에너지 이용 효율성 및 탄소배출량 감축 등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한 목표 를 설정할 수 있다. 사회(S) 영역에서는 인권, 노동, 소비자, 지역사회 상생발전 등 사회적 가치 창출을 목표로 설정할 수 있으며, 지배구조(G) 측면에서는 투명하고 윤리적인 의사결정 구조 확립을 목표로 설정할 수 있다.

#### [그림 4] SK이노베이션의 ESG 비전 및 경영목표



□ ESG 각 분야별 목표는 기업의 역량과 여건을 고려해 실현가 능한 목표를 중심으로 설정하면 된다. SK이노베이션의 경우 '글로벌 ESG 경영 리더'라는 비전 아래 'Net Zero 달성을 통한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동참', '모든 이해관계자와 함께하는 ESG Journey 추진', 'ESG 경영을 주도할 수 있는 이사회 중심 경영체계 Upgrade'라는 경영목표를 수립했다

#### [그림 5] LG에너지솔루션의 ESG 비전 및 경영목표

## We CHARGE toward a better future



□ LG에너지솔루션은 'We CHARGE toward a better future'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CHARGE'의 각 문자에 해당하는 8대 중점 영역과 이를 달성가능하게 만드는 4대 요인을 제시했다. 'C'는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내용으로 환경과 관련 있고, 'H', 'A', 'R'은 각각 인권, 제품 및 작업환경에 대한 기업책임 강화, 공급망 관리 및 동반성장에 관한 내용으로 사회와 관련 있다. 'G'는 윤리경영 등 지배구조와 관련된 내용이며, 'E'는 이해관계자와의 소통과 ESG 이니셔티브에 대한 동참을 뜻하는 내용으로 ESG 전반에 관한 목표로 볼 수 있다.

#### ④ ESG 세부전략 수립

- □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 각 분야별로 설정된 ESG 경영목표가 수립되면 이를 달성하기 위해 각 영역별 구체적인 세부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ESG 세부전략은 ESG 비전와 ESG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중·단기적 추진과제를 뜻한다.
- □ ESG 세부전략의 핵심은 달성가능성과 측정가능성이다. 지나치게 이상적인 전략을 설정하게 되면, 달성에 대한 기업 부담이 커질 수 있으며, 설정한 전략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자칫기업 평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측정불가능한 전략목표를 수립할 경우 달성 여부를 정확하고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어려워진다. 이는 향후 이해관계자 소통 과정에서 ESG 경영의 개선효과 입증을 어렵게 하는 원인이 된다.
- □ 세부전략을 수립할 때에는 앞서 실시한 ESG 리스크 및 기업 ESG 역량 평가 결과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앞서 평가과정에서 참고했던 국내외 ESG 이니셔티브나 평가기관의 평가항목 등을 활용하여 기업의 가치사슬 전반에 적용할 핵심 추진과제를 추려내는 것도 한 방법이다. 세부전략 수립을 위해 자세한 참고자료를 원한다면,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이 발표한 'ESG 모범규준'을 참고하거나, 국내외 ESG 이니셔티 브의 공통적 권고사항을 토대로 핵심 추진과제를 제시한 본고 제3장의 내용을 적극 활용하기를 권한다.

- □ 세부전략 수립을 위해 기업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소통을 통해 핵심 추진과제를 선별해 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를 통해 기존 ESG 리스크 및 기업 역량 평가과정에서 파악하지 못했던 ESG 이슈나 최근 리스크 변화에 대한 파악이 가능하다. 대략 적인 세부전략이 추려지면, 현재 ESG 리스크에 대한 기업의 대응 현황을 구체적인 내용과 계량화된 수치로 표현한다. 이후 현재 기업의 대응이 취약한 세부전략은 보완하고 우수한 세부 전략은 강화하는 방식으로 더 구체적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 □ 기존 경영전략 중 ESG와 관련된 사항이 있는지 자사의 경영 전략 전반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는 것도 방법이다. 예를 들어 신규 공장 건립을 추진 중이었다면, 공장 건립 및 신규 장비 도입을 통한 에너지 사용 효율화를 세부전략으로 제시할 수 있다. 또한, 기업의 차량 운용비용 절감을 위해 전기차 도입을 추진하고 있었다면, 법인차량의 친환경 자동차 교체율을 ESG 세부전략으로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 5 ESG 경영전략 공개, 실행, 평가

□ 수립한 ESG 비전, 목표, 세부전략 등 전체 ESG 경영전략은 기업 구성원과 이해관계자에게 공개하도록 한다. 공개 방식은 법적인 공시 절차를 따르거나, 자사 홈페이지 공지, SNS 홍보 등 다양한 방식을 이용한다. 공개된 ESG 비전, 목표, 세부전략은 향후 ESG 경영을 평가하는 출발점이 되므로, 기업 구성원과 이해관계자가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공개한다.

□ 공개된 ESG 경영전략을 계획에 맞춰 차분히 실행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 ESG 경영을 지향한다고 선언만 하고 제대로 실행하지 않을 경우 소위 '워싱 기업'으로 평가될 수 있다. 이런 평가는 기업 평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직접적 요인이 된다.

#### 제2절 ESG 경영 인프라 구축

#### ① ESG 위원회 등 최고의사결정기구 설치

- □ ESG 비전, 목표, 세부전략을 세웠다면, 이를 추진하기 위한 경영 인프라를 갖추는 것은 필수다. ESG 경영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있어서는 ESG 경영전략을 장기적으로 추진해나갈 리더십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다. ESG 경영 도입을 위해 가치사슬 전반에 ESG 가치를 내재화하는 과정은 오랜 시간이 걸린다. 또한 ESG 리스크의 범위가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 모든 영 역에서 시시각각 변화하는 만큼 이에 대한 대응체계는 항시 작동되어야 한다.
- □ ESG 경영을 위한 리더십을 확보하는 방안 중 하나로 이사회 산하에 ESG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물론 ESG 위원회를 반드시 이사회 내부에만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경영전략의 수립과 집행을 감독하는 이사회의 위상과 역할을 고려할 때 ESG 위원회도 이사회 산하에 설치하는 기업이 많다는 것일 뿐, 기업마다 고유의 경영철학과 전략에 따라 이사회와 별도로 ESG 위원회을 두는 것도 무방하다. 위원회 구성에 모범답안은 없다. 다만, 이사회 내에 ESG 위원회를 설치한 경우를 보면

주로 사외이사 중심으로 구성하고, 위원장도 사외이사가 맡는 사례가 많다. 사외이사를 통해 ESG 경영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거나 외부의 객관적 시각이 필요한 영역을 보완할 수 있기때문이다. 반면 전사적 ESG 경영 도입과 실천력 확보를 위해사내이사(대표이사)가 직접 위원장을 맡는 사례도 있다.

<표 10> 주요기업의 ESG 위원회 구성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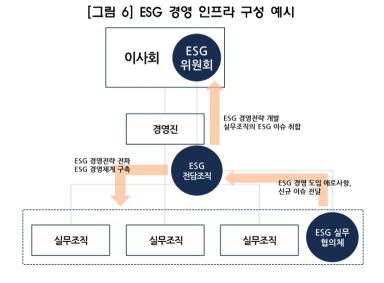
기업명	명칭	위원장	구성	
삼성전자	지속가능경영위원회	사외이사	사외이사 6인	
현대자동차	지속가능경영위원회	사외이사	사내이사 1명, 사외이사 6명	
SK(주)	ESG 위원회	사외이사	사내이사 1인, 사외이사 5인	
㈜LG	ESG 위원회	사외이사	사내이사 1인, 사외이사 4인	
LG전자	ESG 위원회	사외이사	사내이사 1인, 사외이사 4인	
SK(주)	ESG 위원회	사외이사	사내이사 1인, 사외이사 5인	
롯데케미칼	ESG 위원회	사외이사	사내이사 1인, 사외이사 4인	
포스코	ESG 위원회	사외이사	사내이사 1인, 사외이사 3인	
(주)한화	ESG 위원회	사외이사	사내이사 1인, 사외이사 2인	
한국조선해양	ESG 위원회	사외이사	사내이사 1인, 사외이사 3인	
이마트	ESG 위원회	사외이사	사내이사 1인, 사외이사 2인	
CJ제일제당	지속가능경영위원회	사외이사	사내이사 1인, 사외이사 4인	
대한항공	ESG 위원회	사외이사	사외이사 4인	
(주)두산	ESG 위원회	사내이사 (대표이사)	대표이사 산하 3개 분과 11개 실무그룹	
OCI	ESG 위원회	사내이사 (대표이사)	사내이사 1인, 사외이사 4인	

출처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각사 2021년 반기보고서

□ 이사회 내 위원회 형태가 아니라도 최고경영자 직속기구로 위 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대개 심의·의결 기능보다는 보고·협의체로 운영되며 각 분야 담당 임직원으로 구성된다.

#### ② ESG 경영 실행을 위한 전담조직 구성

- □ ESG 위원회 등 최고의사결정기구를 설치하였다면, 그 아래 ESG 경영을 실행할 전담조직을 마련하여야 한다. ESG 경영은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 다양한 이슈를 다루기 때문에 전략 수립 및 평가, 이해관계자 소통 등을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전담조직이 필수적이다.
- □ ESG 전담조직은 기업규모에 따라 최고경영자 직속기구나 경영지원 파트의 팀 단위로 둘 수 있다. 주로 ESG 비전과 경영목표, 세부전략을 조직 전체로 전파하고, 세부전략의 실행 및평가를 위한 보고기준을 마련하며, 여러 부서에 혼재된 ESG정보를 취합하여 ESG 위원회 등의 최고의사결정을 지원하는 '허브'로서의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40

#### ③ ESG 실무협의체 구성

□ ESG 전담조직을 설치하였다고 해서 ESG 경영을 전담조직만 수행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ESG 전담조직과 기존 실무조직 관리자로 구성된 ESG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전략 실행체계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기업규모가 작아 별도의 ESG 전담조직을 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기존 실무조직의 관리자로 구성된 ESG 실무협의체를 구성한다면 ESG 전담조직과 유사한 실행체계를 확보할 수 있다. 실무협의체는 새롭게 수립된 ESG 경영전략을 빠르게 실무조직에 적용하고, 실무조직의 애로사항등 피드백을 신속하게 접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사업활동과 ESG 세부전략을 연동하여 핵심성과지표(KPI)를 수립하는 데에도 용이하다.

#### ④ ESG 성과평가 등 HR 전략 구축

- □ 선도기업들은 ESG 경영이 실무조직 전반에 녹아들 수 있도록 앞서 설명한 조직 및 운영체계 구축 외에도 임직원의 ESG 성과를 평가하고 탁월한 성과를 창출한 구성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하는 등 HR 전략을 제도화하고 있다.
- □ 실제로 애플은 2021년부터 환경과 사회적 가치 창출 부문에서 성과가 있는 임직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했다. 표백제 제품을 생산하는 Clorox는 ESG 목표 달성 여부에 따라 임원 보상을 실시한다. 맥도널드도 현재 37% 수준인 관리직급 여성

비중을 2025년 45%, 2030년 50%까지 확대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다양성 목표를 임원 성과급 결정요소에 포함시켰다. 노사관계에 따라 인사제도의 급격한 변화에 대해 수용성이 낮은 기업이라면, ESG 경영이 확립되기까지는 우선 임원을 대상으로 ESG 평가 및 보상을 실시한 후 부서장과 일반 직원에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 제3절 이해관계자 소통체계 확립

#### ① 이해관계자 파악 및 이슈 분석

- □ ESG 경영 성과가 아무리 탁월해도 이해관계자가 모른다면 의미가 없다. ESG 경영 자체가 투자자의 평가나 이해관계자와의소통을 중시하는 경향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이다. 이해관계자 소통을 위해서는 먼저 기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이해관계자를 파악해야 한다. 실무조직으로부터 사업추진 과정에서자주 접하거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쳤던 이해관계자를 파악하면 된다.
- □ 기업의 주요 이해관계자가 파악되었다면, 해당 이해관계자와의 심흥면접을 통해 이들이 중시하는 ESG 이슈를 파악할 수 있다. 해당 이해관계자와 직접 심흥면접을 하기가 어려운 경우실무조직 부서장과의 심흥면접을 통해 간접적으로나마 이해관계자들이 중시하는 ESG 이슈를 파악해 볼 수 있다. 이렇게조사된 결과는 취합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으로써 향후지속적인 이해관계자 소통의 기반으로 삼도록 한다. 확인된

이슈에 대해서는 자사가 관여된 이슈인지, 공급망 내 협력업체가 관여된 이슈인지 파악하는 것은 물론, 이해관계자 대응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이슈인지 등을 별도 검토할 수도 있다.

#### ② 이해관계자 커뮤니케이션 실시

- □ 이해관계자 파악 및 이슈 분석을 통해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이해관계자 소통체계를 구축한다. 이해관계자 소통방식에는 ESG 정보를 전달하는 정보제공형 소통방식과 주요 이슈 해결 과정에 이해관계자 참여를 보장하는 참여형 소통방식이 있다.
- □ 주주와 투자자에게는 주로 정보제공형 소통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 경우 공시 내용과 절차에 관한 법령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여공개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이다. 고객과 임직원, 공급업체,지역사회 등 이해관계자에게는 주로 참여형 소통방식이 효과적이다. 가령, 지역사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 프로젝트나 활동에 대해 해당지역 주민들이 의견을 밝힐 수 있도록적절한 기회를 제공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 ③ ESG 정보 공개의 원칙

□ 이해관계자에게 ESG 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정보의 취합 및 작성 과정에서 정확성을 확보하고 정보의 보고 범위를 명시하여야 한다. 또한 가공된 정보와 가공되지 않은 정보를 조화롭게 배치하고, 객관적인 관점에서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을

모두 보고하여 편향된 해석을 방지해야 한다. 한국거래소가 ESG 정보 공개 가이던스('21.1월)를 통해 밝히고 있는 정보 공개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명확성 (Accuracy)

명확성 (Clarity)

비교가능성 (Comparability)

적시성 (Timeliness)

[그림 7] ESG 정보 공개의 원칙

#### 1) 정확성(Accuracy)

□ ESG 정보는 이해관계자가 기업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정확해야 한다. 정보의 수집 및 분석 과정에서 다양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보의 오류 및 누락을 방지할 수 있는 체계적 관리가 필수적이다.

#### 2) 명확성(Clarity)

□ 정보 공개는 이해관계자의 요구에 맞는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이해관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명확성을 높이기 위해 기업의 ESG 성과를 정량적 방법으로 측정하여 ESG 정보를 생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 3) 비교가능성(Comparability)

- □ ESG 정보는 이해관계자가 기업의 목표와 성과를 비교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일관된 방법을 통해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지표의 산출 방법에 중대한 변화가 있는 경우 이전 정보를 정정하고 변경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 □ 또한 ESG 정보는 다른 기업의 ESG 정보와 비교가 가능해야 한다. 이해관계자가 동종 업종의 다른 기업과 비교를 통해 특정 기업의 ESG 경영 성과를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비교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글로벌 평가기준과 국내외 공개된 평가지표 및 방법에 따라 ESG 정보를 생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4) 균형(Balance)

□ ESG 정보의 완전성을 보장하고 이해관계자가 기업 전반의 ESG 성과를 합리적으로 평가하도록 돕기 위해서는 자사에 유리한 정보와 불리한 정보를 균형 있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 많은 기업에서 사고 등 부정적인 이슈는 축소하고 긍정적인 활동은 부각하는 경향이 있으나, 기업이 공개하지 않았던 부정적 이슈가 향후 외부에 드러나는 경우 기업이 자발적으로 공개한 것에 비해 기업 평판에 더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 자사에 부정적인 이슈를 공개할 경우에는 기업이 해당 이슈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기업에 대한 부 정적 평가를 막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5) 검증가능성(Verifiability)

□ ESG 정보는 검증이 가능한 방식으로 수집되어야 한다. ESG 정보의 검증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재무정보 검증절차와 유사한 내부통제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ESG 정보를 담은 보고서 및 공개자료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독립적인 제3자 검증기관의 검증을 거치는 것도 방법이며, 이 경우 검증 수준, 범위 및 과정 등을 함께 명시하도록 한다.

#### 6) 적시성(Timeliness)

- □ 이해관계자들이 ESG 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ESG 정보 공개를 주기적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 국내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제24조의2)에 따르면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는 사업보고서의 법정제출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경우 제출기한이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으나, 12월 결산하는 기업의 경우 대체로 6~11월 사이에 제출하고 있다.
- □ 다만, 회계연도 중이라도 기업의 재무적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ESG 이슈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공시할 수 있도록 한다.

### 제3장

# ESG 경영의 기본 원칙과 핵심 추진과제



### 제3장 ESG 경영의 기본 원칙과 핵심 추진과제

- □ 본 장에서는 국내외 ESG 평가지표 중 국제적으로 통용가능한 규범으로서 그 내용이 가장 광범위하고 보편적인 ISO26000,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GRI,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매트릭스, 그리고 국내 ESG 책임투자를 선도하는 국민연금의 ESG 평가지표와 공시규정 등 국내 법령에 기초하여 모범적인 ESG 경영 관행의 기준과 분야별 핵심 추진과제를 제시하고자 하다.
- □ 기업에 따라서는 본 장이 제시하는 과제를 모두 추진하기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자사의 역량과 실행 여건을 고려하는 가운데 리스크가 가장 높은 특정 분야에 집중하여 ESG 경영을 실행할 수 있다.

#### 제1절 ESG 경영의 기본 원칙

- □ 기업의 ESG 경영은 주주 외에도 고객, 직원, 공급자, 지역사회 등 자사와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자(Stakeholder)의 가치를 균형 있게 고려하는 데에서 출발한다. 이러한 점에서 ESG 경영을 기획하거나 추진하려는 기업은 다음 사항을 자발적으로 이행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삼는다.
  - 1. 기업은 지속가능경영으로 경제·환경·사회적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2. 기업은 국내외 시장에서 환경, 인권, 건강, 안전, 노동, 조세, 공정경쟁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다.
- 3. 기업은 제품·서비스의 전체 생애주기에 걸쳐 환경 및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유발하거나 부정적 영향에 관여되지 않도록 하며, 부정적 영향이 발생하면 이를 해결한다.
- 4. 기업은 경영활동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에 대하여 국제사회에서 보편적 가치로 인정되는 인권을 존중한다.
- 5. 기업은 고용과 훈련기회를 창출함으로써 인적자본 형성에 힘쓴다.
- 6. 기업은 건전한 시장 관행에 합치되도록 경영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지역사회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상생 발전하도록 노력한다.
- 7. 기업은 현지 지역사회와 상호신뢰 관계를 강화하는 효과적인 자율통제 관행과 관리시스템을 개발·적용하다.
- 8. 기업은 지역사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프로젝트나 활동에 대해 관련 이해관계자가 의견을 밝힐 기회를 제공한다.
- 9. 기업은 모범적 기업지배구조 원칙을 지지하고 유지하며, 공급망 내 관계기업의 모범적 기업지배구조 관행 확립을 위하여 노력한다.
- 10. 기업은 훈련 등 적절한 전파 수단을 활용하여 회사 정책에 대한 근로자의 인식과 준수를 제고한다.

- 11. 기업은 경영진 또는 관계 기관에 회사 정책이나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사실대로 제보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를 차별 또는 징계하지 않는다.
- 12 기업은 정치활동에 부적절하게 개입하지 않는다.
- 13. 기업은 경영활동으로 인해 실제 발생하였거나 잠재적으로 발생 가능한 부정적 영향을 식별·예방·완화하기 위해 리스크 중심의 실사(risk-based due diligence)를 시행한다. 실사는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기업의 리스크 관리 시스템에 포함한다. 실사의 성격과 범위는 특정 상황 및 여건에 따른다.
- 14. 기업은 비록 자사가 부정적 영향을 유발하지 않았더라도 관계 기업의 운영이나 제품·서비스와 직접 연관되어 있는 경우 당해 부정적 영향을 예방·완화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부정적 영향을 직접적으로 유발한 경우 관계기업에 책임을 전가하지 않는다.
- 15. 기업은 부정적 영향을 직접 해소하는 것 외에, 공급망 내 관계 기업 등에 대해서도 책임경영을 권장한다.
- □ 이상의 내용은 모든 기업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ESG 경영의 기본 원칙이다. 개별기업이 자체적으로 ESG 경영 원칙을 수립 하는 경우에도 부정적 영향의 해결, 이해관계자 참여, 자발적 실사의 실행 등 핵심적 내용은 반드시 포함할 것을 권장한다.

#### 제2절 분야별 핵심 추진과제

#### 1 환경

- □ 기업은 법령과 국제적으로 합의된 원칙에 따라 환경과 공중의 안전을 보호하고,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핵심 과제로 추진한다.
  - 1. 기업은 아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 자사에 적합한 환경관리 시스템을 수립·유지한다.
    - ① 기업 활동이 환경, 보건, 안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정보를 적절하고 시의성 있게 수집하고 평가
    - ② 측정가능한 목적과 환경 성과 개선 및 자원 활용에 대한 목표 설정 (목적은 주기적으로 타당성 검토를 하고, 목표는 관련 국가의 정책과 국제규범에 부합되도록 수립)
    - ③ 목적 및 목표 대비 이행실적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과 확인
  - 2. 기업은 비용, 영업비밀, 지적재산권 보호를 고려하여,
    - ① 환경 성과 개선상황을 포함, 기업 활동이 환경, 보건, 안전 등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에 대해 측정가능하며 시의성 있는 정보를 대중과 근로자들에게 공개한다.
    - ② 환경, 보건, 안전 등 기업 정책의 직접적 영향을 받는 지역 사회와 적절하며 시의성 있게 소통하고 협의하다.

- 3. 기업은 제조공정은 물론, 제품 및 서비스의 전 생애주기에 걸쳐 환경, 보건, 안전에 미치는 예측가능한 영향을 평가하고, 이를 경영 의사결정에 반영한다. 이러한 활동이 환경, 보건,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정부 기관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적절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다.
- 4. 심각한 환경 훼손이 우려되는 경우 보건과 안전을 고려, 기업은 리스크에 대한 과학적 확실성이 없음을 이유로 피해 예방 및 최소화를 위한 효과적 조치를 지연하지 않는다.
- 5. 기업은 사고나 긴급사태를 포함, 자사의 경영활동에서 발생되는 환경 및 건강상 중대 피해를 예방·경감·통제하는 비상계획 (contingency plans)과 관계 정부 기관에 대한 즉각적인 보고 체계를 상시 유지한다.
- 6. 기업은 자사와 공급망 내 관계기업에 다음 활동을 독려함으로써 환경 성과 개선을 지속적으로 모색한다.
  - ① 최상위 성과 부서의 환경 성과 기준을 반영한 기술 및 작업 절차를 기업 내 모든 부서에 확대 적용
  - ②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에너지 및 천연자원을 효율적으로 소비하며, 재사용·재활용 또는 안전하게 폐기가능한 제품 및 서비스의 개발과 공급
  - ③ 제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온실가스 배출량, 생물다양성, 자원효율성, 기타 환경 문제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 으로써 해당 제품 및 서비스 이용에 따른 소비자 인식 제고

- ④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효율적 자원 활용 및 순환, 독성물질 사용의 대체 또는 감축, 생물다양성 전략 등 장기적 관점의 환경 성과 개선에 대한 연구 및 평가
- 7. 기업은 환경영향평가, 환경기술 개발 등 일반적인 경영활동 외에도 위험물질 취급과 환경사고 예방, 환경관련 건강 및 안전문제에 대해 근로자에게 적절한 교육·훈련을 제공한다.
- 8. 기업은 관련 이니셔티브와 파트너십을 통해 환경적으로 의미 있고 경제적으로 효율적인 공공정책을 개발하는 데 기여한다.
- □ 기업은 철저한 계획과 내부관리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과 환경 보호에 기여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 한 '파리협정' 등 국제사회의 약속을 수용해 자사의 중장기적 환경 목표를 설정하고, 이행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가능하면 TCFD 권고를 따라 자사의 기후변화 대응조치가 재 무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관계자에 공개하도록 한다.

#### 2 인권

- □ 기업의 경영활동은 인권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UN의 '보호, 존중, 구제 프레임워크'과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인권보호 의무를 준수하도록 한다.
  - 1. 기업은 인권 존중을 자사 정책으로 확약한다.

- 2. 기업은 자사의 경영활동이 반인권적 영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고, 반인권적 영향이 초래된 경우에는 이를 적극 해결한다.
- 3. 기업은 자사의 운영, 제품 또는 서비스와 직접 연관되어 있거나 사업관계에서 초래된 반인권적 영향에 대해 예방 또는 완화할 방안을 모색한다.
- 4. 기업은 자사의 규모, 운영 특성 및 범위, 반인권적 영향에 대한 리스크의 엄중함 등에 비춰 적절한 인권 실사를 수행한다.
- 5. 기업은 반인권적 영향을 유발하거나 관여되었음을 발견한 경우 이를 회복시키기 위한 합법적 절차를 제시하거나 해당 절차에 협력한다.

#### ③ 고용 및 노사관계

- □ 기업은 적용가능한 법령과 일반적인 고용 및 노사관계 관행, 국제노동기준의 틀 안에서 다음 사항을 천명하고 이행한다.
  - 1. ① 기업은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설립하거나 자발적 선택에 따라 대표단체에 가입할 권리가 있음을 존중한다.
    - ② 기업은 근로조건에 관한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개별적 또는 사용자단체를 통해 노동조합 측과 성실히 협상한다.
    - ③ 기업은 아동근로의 효과적 철폐에 기여한다. 긴급을 요하는 최악 형태의 아동근로에 대해서는 이를 금지 또는 철폐하기 위하여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한다.

- ④ 기업은 모든 형태의 강제근로 철폐에 기여하며, 사업활동에 있어 강제근로가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 ⑤ 기업은 자사의 운영이 고용에 관한 기회 및 균등처우 원칙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하며, 근로자 특성에 따른 선별 조치가 정부의 균등 고용기회 촉진 정책을 더 발전시키거나 직무상 본질적으로 요구되는 것과 무관하다면, 고용 또는 직업에 있어 인종, 피부색, 성별, 종교, 정치적 견해, 국적, 사회적 신분, 기타 사유를 이유로 근로자를 차별하지 않는다.
- 2. ① 기업은 근로자대표에게 단체협약의 효과적인 이행과 진전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한다.
  - ② 기업은 근로조건에 대한 내실 있는 협상을 위해 근로자대표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 ③ 기업은 근로자 및 근로자대표가 개별사업장이나 기업 전체의 성과에 대하여 사실적이고 공정한 견해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한다.
- 3. 기업은 사용자와 근로자(또는 근로자대표)의 공동 관심사에 대해 협의 및 협력을 촉진하다.
- 4. ① 해외 진출한 기업의 경우 현지에 적용하는 고용 및 노사관계 기준은 현지 비교가능한 사용자에 적용되는 기준보다 하회하지 않도록 한다.
  - ② 개도국에서 사업을 영위할 때 비교가능한 사용자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현지 정책이 요구하는 가장 높은 수준의 임금, 수당, 근로조건을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최종적

결정은 기업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되, 최소한 근로자와 해당 가족의 기본 니즈를 충족시키기에 적합한 수준이어야 한다.

- 5. 기업은 자사의 사업활동에 있어 산업안전보건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한다.
- 6. 기업은 근로자대표 및 관계 정부 기관과 협력을 통해 최대한 현지 인력을 고용하고, 숙련 향상을 위한 훈련을 제공한다.
- 7. 고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기업 운영 변화, 특히 경영상 해고를 수반하는 사업장 폐쇄를 검토할 경우 기업은 근로자대표 또는 관계 정부 기관에 통보하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협력한다.
- 8. 근로조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상하는 중이거나 근로자들이 단결권을 행사하고 있는 중에는 협상에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단결권 행사를 방해할 목적에서 사업단위 이전이나 타 사업장 전출로 위협하지 않는다.
- 9. 기업은 자사가 고용한 근로자 중 권한을 부여받은 근로자대표가 의사결정 권한이 있는 경영진 대표와 단체교섭 또는 노사관계이슈에 관하여 협상할 수 있도록 한다.

#### ④ 소비자 권익 보호

□ 기업은 소비자를 대상으로 공정한 영업 관행을 확립하고,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과 신뢰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모든 합리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기업은 OECD, 국제상공 회의소(ICC), 국제표준화기구(ISO), UN 등 국제기구가 제시한 소비자 정책 규범에 기초하여 다음 사항을 이행하도록 한다.

- 1. 기업은 제품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 건강에 대한 경고, 안전에 관한 정보 표식 등이 모든 법적 기준에 충족되도록 한다.
- 2. 기업은 소비자들이 정보에 기초해 제품과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가격, 성분, 사용법, 환경적 특성, 유지, 보관, 폐기 등에 관한 정확하고 명확한 정보를 제공한다. 가능하면 이러한 정보는 소비자가 제품을 용이하게 비교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 3. 기업은 소비자에게 과도한 비용 부담 없이, 공정하며 쉽고 빠른 효과적 분쟁 해결 및 배상 절차를 제공한다.
- 4. 기업은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해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표시하거나 불공정하게 정보를 누락하지 않는다.
- 5. 기업은 소비자가 제품과 서비스 및 시장과 관련, 정보에 기초해 의사결정을 하도록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의 의사결정이 경제 · 환경 ·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여 지속가능한 소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비자 교육을 촉진하고 지원한다.
- 6. 기업은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존중하고, 수집·저장·처리에 있어 합리적 보안조치를 취한다.

- 7. 기업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광고나 허위사실 기재 등 기만적인 마케팅 관행을 방지하고, 공중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제품 및 서비스의 소비·사용·처분에서 파생되는 심각한 환경적 위해를 제거하기 위하여 관계 정부 기관에 최대한 협조한다.
- 8. 기업은 위 핵심 과제를 추진함에 있어 사회적 취약 소비자층을 배려하며 전자상거래로 유발될 수 있는 문제점을 고려한다.

#### 5 지역사회 발전

- □ 기업은 자사의 핵심 역량을 토대로 현지 지역사회와 상생 발전 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한다.
  - 1. 기업은 정부의 에너지, 산업, 과학기술 정책에 부합하도록 사업을 영위하며, 지역사회의 혁신역량 제고에 기여한다.
  - 2. 기업은 현지 노동시장과 사업 목적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직군에 현지 인력을 고용하며, 이들에 대한 교육·훈련을 장려한다.
  - 3. 기업은 지적재산권 보호를 적절히 고려하는 가운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기술 이전 및 노하우 확산을 허용하도록 한다.
  - 4. 기업은 지적재산권 사용에 관한 라이센스를 부여하거나 기술을 이전하는 경우 합리적 조건에 따르는 것은 물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한다.

5. 기업은 사업 목적과 관련된 경우 현지 대학 및 연구기관, 산업· 업종별 단체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조성한다.

#### 6 조세

- □ 조세 분야는 모두 국가법령에 구속되는 관계로 ESG 경영의 주변부로 인식되기 쉽다. 그러나 조세는 세계경제포럼(WEF)이 제시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매트릭스'에 등장하는 공시사항 중 하나로, 인류 번영을 위한 '부의 창출'과 지역사회 기여 측면 에서 중요한 영역이라 할 수 있다.
- □ 조세와 관련하여 기업책임을 다룬 최초의 국제규범은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이다. 이후 국제사회는 이중과세와 탈세 및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OECD 모델 조세협약', 선진국과 개도국 간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UN 모델 이중과세 협약'을 제정했다. 이들 규범에 기초해 기업은 다음 사항을 이행하도록 한다.
  - 1. 기업은 조세를 적기에 납부함으로써 공공재정 확충에 기여하도록 한다. 특히 기업은 자사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모든 국가의 세법 규정과 취지를 준수한다.
  - 2. 기업은 세액을 정확하게 산출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관계 정부 기관에 제공한다. 특히 모회사와 국외 자회사 간 이전가격 (Transfer Price)이 정상가격 관행에 합치되도록 노력하다.

3. 기업은 조세 납부의 의무를 리스크 관리 시스템의 중요 요소로 다룬다. 특히 이사회는 조세 납부와 관련하여 평판이나 법적 · 재무적 위험을 철저하게 규명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조세 리스크 관리 전략을 수립한다.

#### 7 반부패

- □ 뇌물은 기업지배구조와 성과관리체계의 흠결을 일순간에 드러 내며 회사 평판에 돌이킬 수 없는 악영향을 끼칠 뿐 아니라, 공정한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상거래와 투자 증진에 부정적 영 향을 초래한다. 기업은 부패 관행을 스스로 근절함으로써 또 다른 사회적 가치인 공정경쟁 환경 조성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공동 노력(collective action)을 위한 파트너십과 교육·훈련을 통한 부패 근절을 목표로 창설 된 '글로벌 지멘스 청렴 이니셔티브'를 꼽을 수 있다.
- □ 1970년대 후반부터 지금까지 OECD, UN,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 세계무역기구, 국제투명성기구 등 국제사회가 뇌물방지를위해 발표한 반부패 규범은 실로 다양하다. 영업상 이익을 취하거나 유지할 목적으로 기업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뇌물이나기타 부당 이득을 제의·약속·공여·요구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들 규범에 기초해 기업은 다음 사항을 이행하도록 한다.
  - 1. 기업은 공직자나 거래상대방에게 부당한 금전이나 기타 이득을 제의·약속·공여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기업은 공직자 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당한 금전이나 기타 이득을 요구·합의·

수뢰하지 않는다. 기업은 공직자나 거래상대방 또는 그 직원, 친척, 동업자에 부당한 금전이나 기타 이득을 제공하는 통로로 대행사, 중개인, 컨설턴트, 컨소시엄, 납품업체 등 계약관계에 있는 제3자나 합작투자 파트너를 활용하지 않는다.

- 2. 기업은 사업을 영위하는 지역 및 업종에 대한 뇌물공여 리스크 평가에 기초해 적합한 내부통제·윤리·준법 프로그램 또는 뇌물 공여 예방·감시조치를 시행한다. 기업의 내부통제·윤리·준법 프로그램이나 뇌물공여 예방·감시조치에는 기장·기록·계정을 공정하고 정확하게 관리하고, 뇌물공여 은폐 목적으로 활용되지 못하도록 재무·회계절차시스템을 합리적으로 설계하는 것까지 포함한다. 기업은 내부통제·윤리·준법 프로그램 또는 뇌물공여 예방·감시조치의 지속적 시행을 담보하고, 뇌물공여나 청탁 및 강요에 연루될 개연성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경우 개별 여건과 리스크를 주기적으로 감시하고 평가한다.
- 3. 기업은 자사가 직면한 뇌물공여 리스크를 고려해 공급망에 대한 정기적인 감독과 실사 결과를 문서로 남기는 한편, 대행사 등에는 합법적 서비스에 대해서만 적정 보수를 지급한다. 가능하다면 공공기관 및 공기업과 거래하기 위해 계약한 대행사에 대해서는 그 명부를 보존하고, 정보공개 요건에 따라 관계 정부 기관이 열람할 수 있게 한다.
- 4. 뇌물공여, 뇌물 청탁 및 강요에 대처하는 데 있어 기업은 자사활동의 투명성을 강화한다. 이러한 조치에는 뇌물공여, 뇌물 청탁 및 강요에 반대한다는 공개적인 선언을 하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채택한 관리시스템, 내부통제·윤리·준법 프로그램 및 조치를 공개한다. 또한 기업은 뇌물공여와 뇌물 청탁 및 강요 근절에 대한 인식과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공익제보 채널을 구축하는 등 이해관계자 소통을 강화한다

- 5. 기업은 교육과 징계절차를 통해 뇌물공여, 뇌물 청탁 및 강요 근절에 대한 회사 정책과 내부통제·윤리·준법 프로그램에 대한 근로자들의 인식을 제고하여야 한다.
- 6. 기업은 공직후보자나 정당, 그 밖의 정치단체에 불법적인 후원을 하지 않는다. 정치적 후원은 철저하게 공개요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경영진(senior management)에 이를 보고한다.

#### 8 공정경쟁

- □ 공정경쟁에 관한 법령이 있는 경우 기업은 해당 법령을 준수 하며, 국내외 시장의 효율적 운영을 저해하는 반경쟁적 계약 체결 등을 하지 않는다.
  - 1. 기업은 경제적 피해가 미칠 수 있는 영역을 고려, 적용가능한 모든 경쟁 관련 법규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기업 활동을 수행한다.
  - 2. 기업은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행하지 않 도록 한다
    - ① 가격의 고정

- ② 담합 입찰(collusive tenders)
- ③ 생산량 제한 또는 쿼터 설정
- ④ 고객, 납품업체, 지역, 거래선 할당 등 시장 분할 또는 공유
- 3. 기업은 법령에 따라 관계 정부 기관의 정보 요청이 있는 경우 신속하고 정확하게 답변을 제공하되, 필요한 경우 기밀사항 유예 등에 관한 규범을 활용함으로써 관계 정부 기관에 협조한다.
- 4. 기업은 근로자들에게 경쟁 관련 법규 준수의 중요성을 정기적으로 알리고, 경쟁 이슈와 관련하여 경영진을 교육한다.

#### 9 정보공개

- □ 기업에 대한 정확하고 완전한 정보는 이해관계자에게 중요한 요소다. 따라서 기업은 투명한 기업 운영과 정보에 대한 대중의 수준 높은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추진한다.
  - 1. 기업은 자사 활동, 재무상태, 성과, 소유지분, 지배구조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해 적시에 정확한 정보를 공개하는 정책을 수립 하도록 한다. 상장회사의 경우 거래소 공시규정과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작성 서식, ESG 정보공개 가이던스 등이 규정하고 있는 정보공개의 범위와 방법을 우선적으로 참고한다.
  - 2. 기업이 공개하는 정보는 국제규범에 따라 분류·구성함으로써 이해관계자들의 정보 접근성과 이해도를 높이도록 한다.

- 3. 기업의 정보공개 정책에는 다음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도록 한다.
  - ① 기업 목적
  - ② 재무·영업 성과
  - ③ 지배강화 메커니즘과 구조 및 내부 계열사 관계를 포함한 대주주 소유지분 비율 및 투표권
  - ④ 이사의 자격, 선출과정, 임기, 독립성 등 이사회 구성원에 대한 정보와 이사회 구성원 및 핵심 경영진에 대한 보수정책
  - ⑤ 이해관계자 간 내부거래 내용
  - ⑥ 예측가능한 리스크 요인
  - ⑦ 근로자 및 기타 이해관계자에 관한 사항
  - ⑧ 최고 의사결정 구조 및 정책, 특히 기업지배구조 강령 또는 정책과 실행 프로세스의 내용
- 4. 기업은 적법한 공시 절차에 따라 다음 사항을 포함한 부가정보를 공개하도록 노력한다.
  - ① 기업 정책 등에 대한 정보공개 또는 기업행동 선언
  - ② 기업이 추구하는 정책과 선언, 채택 날짜와 적용 사업장
  - ③ 동 선언의 이행 성과
  - ④ 내부감사, 리스크 관리, 준법감시 시스템에 관한 정보
  - ⑤ 근로자에 관한 정보
  - ⑥ 기타 이해관계자와의 관계에 관한 정보
- 5. 기업은 개별 여건을 고려하여 가장 높은 수준의 회계 및 (환경· 사회영향평가 보고를 해야 하는 경우 이를 포함한) 재무적·비

재무적 정보공개 기준을 적용한다. 기업의 재무제표가 모든 면에서 기업의 재무적 상태 및 성과를 공정하게 반영하고 있음을이사회 및 이해관계자에게 객관적으로 보증하기 위해 감사를실시한다. 연례 감사는 독립적이며 역량과 자격을 갖춘 감사에의해 시행되도록 한다.

6. 정보공개는 자사의 홈페이지 및 공시시스템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시행하도록 한다. 또한 정보공개 시점은 사업보고서 발간 시점과 지나치게 차이 나지 않도록 한다.

#### 10 지배구조

- □ 기업은 보다 투명하고 윤리적인 의사결정구조를 확립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앞서 소개한 분야별 핵심 추진과제를 선정하고 실행하는 과정도 결국은 최고의사결정 과정을 수반하기때문이다. 특히 이사회와 감사기구 등 기업지배구조와 관련해서는 상법 및 회사법령을 준수하는 것은 기본이다. 이에 더해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국민연금이 최근 지배구조 이슈와 관련해 의결권 행사 방향 결정 등 주주활동을 위한 내부 기준으로 '이사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국민연금기금 책임투자 방향 설명서'를 공개한 바, 이에 기초하여 기업은 다음과 같은 핵심 과제를 추진하도록 한다.
  - 1. 기업은 주주에게 권리행사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하고, 적절한 절차에 의해 주주로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

- ① 모든 주주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주주총회 부의안건 및 내용을 인지할 수 있도록 의안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
- ② 법령에 의해 요구되는 공시사항 외에도 영업·생산활동 또는 기업경영활동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주가 또는 투자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 또는 결정이 있을 경우 이를 공개
- ③ 주주제안 절차 등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하고, 주주가 제안한 의안을 처리하는 기준 및 절차를 마련
- ④ 주주총회 시 주주가 제안한 의안에 대해서는 해당 주주가 자유롭게 설명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다른 주주가 질의를 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회 제공
- ⑤ 주주총회 시 서면투표 또는 전자투표 도입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주주가 최대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⑥ 기관투자자 등이 제출한 공개서한의 주요 내용 및 이에 대한 처리 현황을 공개
- 2. 기업은 배당을 포함한 합리적 주주환원정책을 수립하여 공개하고, 이를 주주에게 안내한다.
- 3. 기업은 증권의 전환, 신주인수권 부여, 종류주식 발생 등 자본 구조를 변경하는 안을 마련할 경우 주주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며, 지배주주 등 다른 주주의 부당한 자기거래 및 내부거래 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해 운영한다.
- 4. 이사회는 회사경영에 대한 포괄적인 권한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회사 및 주주가치 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주요 경영의사결정 및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한다.

- 5. 이사회는 장기적인 주주가치 제고를 목적으로 주주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음의 사항과 관련하여 주주 등 이해관계자와 대화하기 위해 적절한 수단 및 절차를 마련한다.
  - ① 회사의 배당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 ② 임원 보수한도 적정성에 관한 사항
  - ③ 법령상 위반 우려로 기업가치의 훼손 내지 주주권익을 침해 할 수 있는 사항
  - ④ 주주총회 안건 중 주주가 지속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시하는 안건에 관한 사항
  - ⑤ 환경, 사회, 지배구조 관련 회사의 변동에 관한 사항
- 6. 이사회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과 관련하여 예상하지 못한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익 침해 우려가 발생한 경우 충분한 논의를 거쳐 사실관계 및 회사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재발방지 대책 등을 수립해 그 진행 상황을 주주에게 알린다.
- 7. 이사회는 최고경영자 유고 등 비상 시 혹은 최고경영자 퇴임 시 최고경영자 승계절차 등의 내용을 담은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공개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8. 이사회는 내부통제정책(리스크 관리, 준법경영, 내부회계관리, 내부공시정보관리 등)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한다.
  - ①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를 위하여 회사의 회계 및 보고 시스템, 내부통제체계, 리스크 관리 정책을 마련하고, 재무·비재무

-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감독
- ② 기업은 법령에 따라 준법지원인 선임 또는 준법지원조직을 설치하여 이사회 및 경영진의 적법한 업무수행을 지원
- ③ 기업은 공시정보관리규정을 마련하고 임직원들에게 주기적으로 교육하여 주식 관련 불공정 거래행위를 예방
- 9. 이사회는 효율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경영진을 감독할 수 있 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투명한 절차를 통해 선임하도록 한다.
  - ① 효과적이고 신중한 토의 및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이사회 규모를 지속적으로 검토·유지
  - ② 법령상 비율 이상으로 충분한 수의 사외이사를 두고, 사외이사가 실질적으로 독립적 위치에 있는지 공시하도록 노력
  - ③ 과도한 겸임으로 충실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자, 직전 임기 동안 이사회 참석률이 75% 미만이었던 자,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익 침해 이력이 있는 자로서 일정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자, 당해회사 또는 계열회사 재직 시 명백한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익 침해행위에 대한 감시 의무를 소홀히 한 자 등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이사회를 구성
  - ④ 당해회사 또는 계열회사(비영리법인 포함)의 최근 5년 이내 상근 임직원, 중요한 지분·거래·경쟁관계 등에 있는 회사 (비영리법인 포함)의 최근 5년 이내 상근 임직원, 해당 상장 회사에서 6년 이상 사외이사로 재직하였거나, 해당 상장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에서 사외이사로 재직한 기간을 합산하여 9년 이상인 자, 법률자문·경영자문 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등 회사와의 이해관계로 인해 사외이사로서 독립성에

- 우려가 있는 자 등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사외이사로 선임
- ⑤ 기업은 사외이사 회의를 개최해 독립적 환경에서 사외이사 간 회사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도록 지원
- 10. 기업은 이사의 충실한 직무수행을 유도하기 위해 이들의 활동 내용을 공정하게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지급 및 재선임 여부를 결정한다.
  - ① 이사회, 이사, 이사회 내 위원회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기준 및 절차 마련
  - ② 사외이사에 대해서는 자기평가, 사외이사 상호평가, 외부평가 등을 활용하여 평가의 공정성 확보
  - ③ 이사의 보수는 회사 및 주주의 장기가치 창출과 연계되도록 하며, 이사회는 이를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가능한 범위에서 이를 공개하도록 노력
  - ④ 사내이사 보수한도 제안 시 경영성과 등에 연계하고, 주주가 이사보수의 실지급액을 고려하여 보수한도에 대한 실질적 승인이 가능하도록 그 내용을 주주총회 소집공고 시 공개
  - ⑤ 이사회는 지급 주체, 대상, 수준, 근거 등을 규정한 퇴직금 또는 퇴직위로금 지급규정을 마련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획득하되, 황금낙하산 계약과 같이 주주의 이익을 희생하고 경영진과 이사회를 보호하는 용도로 활용되지 않도록 노력
- 11. 기업은 이사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며,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운영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사회 운영규정을 마련한다.

- 12. 기업은 이사회 내에 특정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되, 감사위원회는 3분의2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한다.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은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한다.
- 13. 기업은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가 경영진 및 지배 주주로부터 독립적 입장에서 성실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내부감사기구의 주요 활동내역을 공시한다.
  - ①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는 감사활동, 외부감사인 선임, 내부회 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등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공시
  - ② 기업은 개별 감사위원회 감사위원회 출석내역, 안건 찬성률, 주요 토의내용과 결의사항을 개별 감사위원별로 기록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충실하게 공시
- 14.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는 회사의 회계 및 감사 전반에 대하여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감사를 실시하도록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되,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 ① 외부감사인에게 비감사용역 보수를 비롯하여 외부감사인의 독립성을 훼손할만한 용역 및 비용을 제공하지 않도록 감독
  - ② 감사전 재무제표를 정기주주총회 6주전에, 연결기준 감사전 재무제표를 정기주주총회 4주전에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전담부서의 직무수행을 관리

③ 외부감사인이 감사과정에서 확인한 각종 위험을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에 보고하고 정기적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 마련

# 제4장 실사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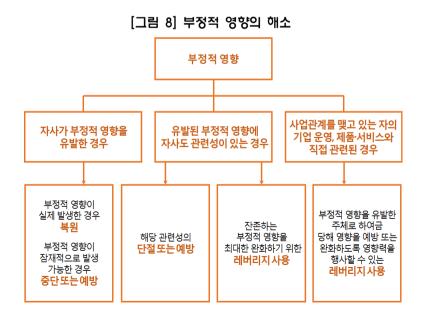


# 제4장 실사 방안

□ 기업의 자발적 실사와 관련하여 업종과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적용가능한 국제규범으로는 OECD가 2018년 6월 회원국 만장일치로 채택한 '기업책임경영 실사 가이던스(Due Diligence Guidance for Responsible Business Conduct)가 유일하다. 본장에서는 동 가이던스의 핵심 내용에 기초하여 기업의 자발적실사 과정과 각 단계별 구체적 점검사항을 소개하고자 한다.

# 제1절 실사의 필요성과 원칙

□ 자발적 실사는 자사의 운영과 공급망 내에서 발생하는 부정적 영향을 식별, 예방, 완화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절차이다.



□ 효과적인 실사를 위해서는 ESG 경영을 자사의 정책 및 관리 시스템으로 내재화하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며, 자사가 부 정적인 영향을 유발하거나 관여된 경우 이를 적극 해소하고 이전 상태로 신속하게 회복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 ① 자발적 실사의 필요성

- □ 기업의 자발적 실사는 앞서 살펴 본 환경, 인권, 고용 및 노사 관계, 소비자 권익 보호, 지역사회 발전, 조세, 반부패, 공정 경쟁, 정보공개 등 ESG 이슈와 관련하여 실제 발생한 부정적 영향과 잠재적으로 발생가능한 부정적 영향을 다룬다.
- □ 일반적으로 기업에서 말하는 리스크는 재무리스크, 시장리스크, 영업리스크, 평판리스크 등 대개 기업에 부담이 되는 외부적 위험요인을 말한다. 기업은 경쟁자와 비교한 시장지위, 이미지, 장기 생존에 관심을 갖는다. 그래서 기업은 자사에 부담되는 리스크를 떠올리게 되는 반면, ESG 경영에서 말하는 리스크는 사람, 환경, 사회적 측면에서 기업이 유발하거나 관여됨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의 가능성, 즉 기업이 외부에 미치는 리스크(Outward-facing Approach to Risk)를 말한다. 기업은 자사의 운영과 공급망 내 사업관계에 따른 상황을 파악함으로써 부정적 영향의 리스크를 판별해 낼 수 있다.
- □ 기업의 자발적 실사 결과, 자사와 공급망 내 사업관계에 있어 앞서 제시한 ESG 경영의 핵심 추진과제에 부합하지 않거나 부족한 행동이 잠재해 있을 때 이미 부정적 영향의 리스크

(Risk of Adverse Impacts)는 존재하는 것이다.

- □ 사업 활동과 이를 통해 제공되는 제품 및 서비스는 ESG 이슈와 관련하여 부정적 영향을 유발할 수 있는 리스크를 일정 부분 내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미비한 법규와 집행, 공급망내 협력업체 및 기타 사업관계자의 행위 등 기업을 둘러싼 환경에서 초래되는 리스크도 있다.
- □ 실사는 기업으로 하여금 부정적 영향을 예측하고, 이를 예방 또는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어야 한다. 한편으로 실사는 부정적 영향의 리스크가 너무 크거나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이 실패한 극단적인 경우 기업의 운영 또는 사업관계의 중단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 □ 부정적 영향의 효과적 예방·완화는 그 반대급부로 사회에 대한 기업의 긍정적 기여를 극대화하고, 이해관계자와의 관계를 개선 하며, 우호적 기업 평판을 유지할 수 있게 한다. 실사는 비용절감을 위한 기회 포착, 공급시장 및 전략적 구매에 대한 이해증진, 사업 및 운영 리스크에 대한 관리 강화, 법위반 개연성축소, 체계적 리스크(Systemic Risks)에 대한 노출 감소 등을통해 기업이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기업 입장에서 환경, 인권, 고용 및 노사관계, 소비자 권익 보호, 지역사회 발전, 조세, 반부패, 공정경쟁, 정보공개 등 특정ESG 이슈에 관한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관련 분쟁에 대비한 근거 마련을 위하여 실사를 시행할 수도 있다.

# ② 자발적 실사의 10대 원칙

#### 1) 예방적 성격

□ 실사는 사람, 환경, 사회에 대해 기업이 부정적 영향을 유발하 거나 부정적 영향에 관여되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사업관계 전반에서 자사 운영 또는 제품·서비스가 직접적으로 관련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기업이 부정적 영향에 관여되어 있는 경우에는 실사를 통해 부정적 영향의 완화와 재발 방지, 적절한 회복 조치를 취해야 한다.

#### 2) 다양한 목적과 절차

- □ 실사는 ESG 이슈와 관련한 부정적 영향의 식별, 예방, 완화와 이를 위한 이행사항의 추적, 자사 내부는 물론 공급망 내 이해 관계자와의 소통 등 상호 연관된 절차들이 수반된다. 이러한 면에서 실사는 기업 의사결정과 리스크 관리의 필수 요소이다.
- □ 기업은 실사를 통해 충분한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거래상대방 확인절차(Know Your Counterparty)를 마련하는 셈이다. ESG 경영을 자사의 정책 및 관리시스템으로 내재화하게 되면, ESG 이슈와 관련한 부정적 영향을 예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명확한 기업 전략과 구성원 역량 강화, 필요 자원의 확보, 경영진의 확고한 의지 등을 담보함으로써 효과적 실사가 이루어지도록 지원할 수 있다.

#### 3) 리스크와의 비례성

- □ 실사는 리스크에 기반을 둔다. 이는 기업이 실사를 수행하기 위해 취하는 모든 조치가 부정적 영향의 가능성 및 심각성에 비례해야 함을 의미한다. 부정적 영향의 가능성 및 심각성이 높은 경우 실사는 보다 광범위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 □ 또한 실사는 ESG 이슈에 대한 부정적 영향의 본질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특정 리스크에 대하여 맞춤형 접근과 함께 해당 리스크가 다각적인 측면에서 자사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

#### 4) 우선순위의 설정

- □ 확인된 부정적 영향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없다면, 당해 부정적 영향의 가능성 및 심각성에 기초해 기업이 취해야 할 조치의 우선순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부정적 영향이 가장 중대한 것부터 차례로 처리해 나가는 것이다. ESG 이슈와 관련하여 부정적 영향을 유발하거나 부정적 영향에 관여되어 있다면, 해당 기업은 그 원인이 되는 활동을 중단하거나 회복 조치에 적극 나서야 한다.
- □ 우선순위의 설정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되는 과정이다. 부정적 영향을 해결해 가는 과정에서 부정적 영향이 새롭게 발견되었다면, 기업 대응의 우선순위도 변경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인권과 관련해 신속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의 심각한 부정적 영향이 예견되는 경우에는 그 부정적 영향의 잠재적 심각성이 기업 대응의 우선순위를 설정 하는 결정적 요인이 되는 것이다.

#### 5) 역동성

□ 실사는 정적인 과정이 아니라 사정에 따라 대응하고 변화하는 과정이다. 여기에는 무엇이 효과적인지 또는 무엇이 비효과적인지 파악할 수 있는 피드백 과정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부정적영향을 피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기업은 시스템과 프로세스의점진적 개선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실사도 마찬가지다. 실사절차를 통해서 기업은 규제 변화, 분야별 신규 리스크 출현, 새로운 제품과 사업관계 발전 등 주위 여건에 따른 리스크의 잠재적 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 6) 책임전가 불허

□ 사업관계에 있는 각 기업들은 스스로 ESG 이슈와 관련하여 부정적 영향을 확인하고 해결할 책임이 있다. 자사가 부정적 영향에 단순 관여된 경우라 하더라도 사업관계를 맺고 있다는 이유로 부정적 영향에 직접 연관된 기업에 그 책임을 전가해 서는 안 된다.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는 공급망 내 모든 기업에 책임이 있는 만큼, 개별적으로든 다른 관련 주체와 협력해서든 효과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 7) 국제적으로 인정된 ESG 기준 반영

- □ 기업의 ESG 경영은 적용 가능한 법률과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규범의 토대 위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ESG와 관련한 다양한 국제규범은 물론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매트릭스와 같은 세계 경제포럼(WEF)의 최신 권고도 사업을 영위하는 지역에서의 국내법 준수를 최우선적 의무로 권고하고 있다.
- □ 기업은 실사를 통해 ESG 이슈에 관한 법적 의무를 준수해 나갈 수 있다. 국내 법령이 미비한 경우에는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국제규범을 따르면 된다. 국제규범은 뇌물수수, 노동착취, 분쟁 지역 및 고위험 지역에서의 광물 채취 등 특정 ESG 이슈에 관한 보완적 준수기준으로 작용해 기업의 대응을 요구한다.

# 8) 기업의 개별적 상황 고려

□ 실사의 본질과 범위는 개별기업의 규모, 운영 상황, 사업모델, 공급망 내 위치, 제품 또는 서비스 특성 등 요인에 따라 변할수 있다. 규모가 작은 기업에 비해 운영 규모가 크고 제품과 서비스가 다양한 대기업의 경우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식별해 관리하려면 보다 공식적이고 광범위한 시스템이 필요하다.

# 9) 사업관계상 한계의 극복

□ 기업은 ESG 이슈와 관련한 부정적 영향을 중단, 예방, 완화하 거나 부정적 영향을 해소하고자 관계기업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현실적 또는 법적 한계에 부딪힐 수 있다. 특히 중소기업은 관계기업에 영향력을 행사할 만큼 시장지배력이 없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기업은 계약조건이나 사전자격심사 요건, 의결권 신탁, 라이센스 또는 프랜차이즈 약정을 통하거나 업종별단체 및 이니셔티브를 이용한 집단적 영향력 행사를 통하여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 10) 이해관계자 참여를 통한 정보 수집과 지속적인 소통

- □ 이해관계자라 함은 기업 활동에 따라 그 영향이 미칠 수 있는 권익을 보유한 개인 또는 집단을 말한다. 이해관계자 참여는 보통 양방향 소통을 특징으로 한다. 이는 이해관계자가 정보에 기초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이해하기 쉽고 접근가능한 형태로 적시에 공유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 □ 이해관계자 참여가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모든 주체의 선의가 필요하다. 관련 이해관계자의 의미 있는 참여는 실사 절차의 전반에 걸쳐 중요하다. 특히 기업이 부정적 영향을 유발하거나 부정적 영향에 관여된 경우에는 그 영향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은 이해관계자 및 권리당사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이해관계자 참여 형태로는 부정적 영향의 내용과특징에 따라 현장평가에 참여해 결과를 공유한다거나, 리스크 완화 조치의 수립 과정, 고충처리제도나 고객불만처리제도의 설계 및 모니터링 과정에 참여하도록 허용하는 등 다양한 형태가 있을 수 있다.

- □ 실사 과정과 결과 및 후속조치에 관한 소통은 그 자체가 실사 절차의 일부분이다. 소통을 통해 기업은 자사의 행동 및 의사 결정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 선의를 입증할 수 있다. 기업은 실제적 또는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을 어떻게 식별하고 해결하는지 그 방법을 설명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알려야 한다.
- □ 소통할 정보는 이해관계자, 투자자, 소비자 등 관련 주체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부정적 영향에 대해 기업이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도록 충분한 내용을 담아야 한다. 거래상 기밀, 경쟁 또는 보안 문제를 고려하면서 최대한 소통하려면 다양한 전략이 필요할 수도 있다.

# 제2절 실사 과정 및 점검 사항

- □ 자발적 실사는 크게 i) ESG 경영을 기업 정책 및 관리시스템에 통합시키는 과정, ii) ESG 이슈와 관련해 실제 발생하였거나 발생 가능성이 있는 부정적 영향을 판별하는 과정, iii) 부정적 영향을 중단·예방·완화하는 과정, iv) 관련 조치의 이행 상황 및 결과를 추적하는 과정, v) 관련 조치의 이행 결과를 이해 관계자와 소통하는 과정, vi) 필요한 경우 부정적 영향에 대한 회복 조치를 제공하거나 협력하는 과정 등 6단계로 구분된다.
- □ 기업의 자발적 실사는 실제적·잠재적 리스크를 중심으로 그에 비례하여 실시하되, 개별기업의 특정 상황과 여건에 맞춰 실시하면 된다. 실사 과정의 각 단계에서 실무적으로 점검해야 할 구체적인 사항은 아래와 같다.

[그림 9] OECD 기업책임경영 실사과정 및 지원조치



# ① ESG 경영을 위한 정책 및 관리시스템 구축

1. 기업은 자사의 사업 목적과 운영, <del>공급</del>망 내 협력업체 및 사업 관계자에 적합한 실사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표명하고 전파한다.

#### 이행사항

- 1) 제3장에서 설명한 ESG 경영의 기본 원칙과 핵심 추진과제에 맞춰 환경, 인권, 노동, 소비자, 지역사회, 반부패, 정보공개 등 ESG 이슈에 관한 자사의 기존 정책을 검토하고 업데이트한다.
- 2) 리스크 평가 결과 발견된 중대한 리스크 요인을 해결하는 데 지침이 될 수 있는 자사 정책을 구체적으로 수립한다. 이 정책 에는 기업의 자발적 실사가 포함되도록 한다.

- 3) ESG 이슈에 대한 자사 정책을 홈페이지 또는 사업장 게시 등을 통해 공개한다. 법령상 공시절차가 있는 경우 이를 따른다.
- 4) 해당 정책은 오리엔테이션이나 교육 등을 통해 자사 직원 및 협력업체에 주기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한다.
- 5) 자사의 운영, 공급망 내 협력업체 또는 기타 사업관계 안에서 실제 발생하였거나 잠재적으로 발생가능한 리스크를 고려하여 ESG 이슈에 대한 자사 정책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한다.
- 2. ESG 이슈에 대한 자사 정책은 이사회 등 최고의사결정기구에서 결정·조정하도록 한다. 해당 기구는 독립성 및 자율성, 합법적 구조를 갖추어야 하며, 자사의 ESG 정책은 관리시스템에 포함 시켜 일상적 사업 프로세스의 일부로 실행한다.

#### 이행사항

- 1) ESG 경영에 관한 이사회 수준의 책임을 폭넓게 할당하고, 기업 실사에 관한 감독 및 책임을 관련 경영진에 부여한다.
- 2) ESG 관련 리스크를 증감시킬 행동이나 의사결정이 빈번한 구 성원들에 주목하여 ESG 경영 실행에 관한 책임을 관련 부서에 할당한다.

- 3) 실사 관련 의사결정 및 대응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기존 정보관리시스템을 조정·보완한다.
- 4) 리스크와 의사결정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문서화하기 위하여 관련 경영진과 이행부서 간 의사소통 채널을 구축한다.
- 5) ESG 경영 정책과 관련한 팀 또는 사업단위 조정을 장려한다. 가령 리스크에 관한 정보와 의사결정을 공유할 수 있도록 복합 기능적(Cross-functional) 전담조직 또는 협의체를 발족하거나, ESG 경영 실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단위를 의사결정 과정에 포함시키는 방식도 가능하다.
- 6) ESG 경영 정책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며, 필요한 실사 수준에 비례하여 적절한 자원을 할당한다.
- 7) ESG 이슈에 관해 근로자가 불만이나 문제를 제기할 수 있도록 새로 절차를 마련하거나, 기존 고충처리절차를 조정·보완한다.
- 8) ESG 경영 정책에 부응하는 근로자 및 사업단위를 위하여 인센 티브를 도입한다.
- 9) ESG 경영 정책을 준수하지 못했을 경우 대응 프로세스를 개발하고, 능력개발, 징계처분 등 제재수단을 마련한다.
- 3. ESG 경영에 대한 기대사항과 정책을 공급망 내 협력업체 또는 기타 사업관계자와의 계약 내용에 포함한다.

#### 이행사항

- 1) ESG 이슈에 관한 자사의 핵심 정책을 공급망 내 협력업체 및 기타 사업관계자에게 알린다.
- 2) 협력업체 및 기타 사업관계자와의 계약이나 서면합의에 ESG 이슈에 대한 조건 및 기대사항을 포함시킨다.
- 3) 협력업체 및 기타 사업관계자에 대한 사전 실사적부심사절차 (Pre-qualification Processes)를 개발·시행한다. 해당 절차는 사업관계와 그에 따른 활동 및 영업 분야에서 빈번하게 발생한 특정 리스크와 전후 사정에 맞춰 조정한다.
- 4) 협력업체 및 기타 사업관계자들이 ESG 경영 정책을 이해하고, 자체 실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지원을 제공한다.
- 5) 협력업체 및 기타 사업관계자와의 구매 관행과 거래 인센티브 등에 있어 자사의 ESG 경영 정책에 저촉되는 사업 장벽을 찾아 제거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 ② 부정적 영향의 식별

1. 자사의 운영과 공급망 내 협력업체를 포함한 사업관계 전반에서 ESG 리스크가 가장 빈번하고 중대하게 발생하는 사업 분야를 규명하기 위해 리스크 식별 범위를 가능한 광범위하게 지정한다. 리스크 식별 범위를 지정할 때는 부문별 리스크 요인, 지역적

리스크 요인, 제품이나 기업 내에 발생한 이력이 있거나 발생 가능성이 있는 리스크 요인들을 기준으로 한다. 리스크 식별 범위 지정을 통해 기업은 리스크가 가장 엄중한 분야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향후 추가적인 평가를 진행한다. 기업 운영이 다양하지 않은 소규모 기업의 경우 리스크 식별 범위를 지정하는 것 대신특정 리스크의 영향을 파악해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도 있다.

#### 이행사항

- 1) 자사의 사업 분야와 사업관계 유형에 대해 개괄적인 그림을 그려어떤 정보를 수집할지 파악한다.
- 2) 리스크 파악을 위해 ① 제품과 각 제품의 공급망, 서비스, 기타활동 등 부문별 요인, ② 환경과 인권 측면에서 부정적 영향이미치는 지역, 법령 관할, 분쟁 관할 등 지리적 요인, ③ 부패또는 위법행위를 저지르거나, 자사의 ESG 경영 정책을 저촉한해당 기업의 특정 요인 등 관련 정보를 수집한다. 관련 정보는 정부, 국제기구, 시민사회단체, 근로자대표 및 노동조합, 국가인권기구, 언론, 기타 전문가 보고서 등을 통해 수집할 수 있다.
- 3) 조기경보시스템과 고충처리절차를 통해 제기된 정보를 고려하되, 정보의 차이(gaps)가 있는 경우 관련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와 협의한다.

- 4) 가장 중대한 ESG 관련 리스크 분야에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실제적·잠재적 영향에 대한 심층평가의 출발점으로 삼는다.
- 5) 리스크 식별 범위의 지정 결과를 주기적으로 검토한다.
- 6) 신규 협력업체 선정, 신규 제품 및 서비스 라인 구축, 제품 및 서비스 투입요소 변경, 구조조정 또는 인수·합병, 신규 고객 및 시장 확보 등 사업관계에 중대한 변화가 있을 때마다 새로운 정보를 토대로 리스크 식별 범위 지정을 업데이트한다.
- 2. ESG 이슈와 관련하여 실제 발생하였거나 잠재적으로 발생가능한 부정적 영향을 구체적으로 규명하기 위해 가장 중대한 리스크 분야부터 시작, 우선순위에 따라 자사의 운영, 협력업체 및 기타 사업관계자에 대해 주기적·심층적 리스크 평가를 수행한다.

#### 이행사항

- 1) 리스크의 우선순위와 관련하여 자사의 운영과 공급망 및 기타 사업관계를 도식화한다.
- 2) 평가대상 리스크에 적용가능한 자사의 구체적 ESG 경영 정책 및 이슈, 법령, 국제규범 등을 목록화한다.
- 3) 가능한 경우 직접 계약관계에 있는 협력업체 외 2차 사업관계자 등에 대해서도 관련 정보를 수집한다 공급망 내에 있는 주요

협력업체를 통해 2차 사업관계자 등에 대해서도 리스크를 평가할 수 있도록 프로세스를 구축한다.

- 4) 우선순위 리스크 분야를 중심으로 자사 운영, 공급망 및 기타 사업관계에서 발생하였거나 발생가능한 부정적 영향에 대해 어떤 이슈가, 어떤 방법으로,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본질과 수준을 평가한다. 이를 위해 가능한 경우 해당 기업 또는 업종별 단체 등 제3자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인권영향평가, 법률검토, 재무 감사, 근로감독, 청렴도 평가 등 관련 정보를 활용한다.
- 5) 관련 기업과 개인의 권리를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 법제도가 갖춰져 있는 경우 이를 고려해 리스크 평가 시 수행하지 않아도 되는 활동을 구분한다.
- 6) 기업 인수·합병, 구조조정, 신규시장 진출, 신규 제품·서비스 개발 등 계획된 사업 활동을 추진하기에 앞서 해당 사업 활동 및 사업관계자가 특정 ESG 이슈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파악한다.
- 7) ① 신규시장 진출, 제품 출시, 사업 다각화, 정책 변경 등 주요 의사결정에 앞서 필요한 경우, ② 사회적 갈등 유발 등 사업환경 변화가 예상되거나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③ 기업 활동 또는 사업관계 전반에 걸쳐 시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부정적 영향을 정기적으로 재평가한다.
- 8) 인권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의 효과적 참여를 저해 하는 요인을 감안하여 근로자, 근로자대표, 노동조합을 포함한

권리당사자와 성실히 협의함으로써 부정적 영향 및 리스크에 관한 정보를 수집한다.

- 9) 인권 관련 부정적 영향 및 리스크에 관한 정보를 수집함에 있어 권리당사자와 직접 협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신뢰할 만한 컨설팅 기관이나 전문가, 근로자대표, 시민사회단체 등과 협의하는 등 합리적 대안을 모색한다. 부정적 영향이 예상되는 사업 계획이나 활동에 대해서는 시행 전은 물론 시행 중이라도 잠재적 관련성이 높은 권리당사자와 협의한다.
- 10) 인권 관련 영향 평가 시 취약계층 또는 소외계층에 타격이 큰 부정적 영향이나 남녀간 리스크 차이를 유발하는 부정적 영향 에 대해서는 각별한 주의를 기울인다.
- 11) 사업장이 여러 곳인 기업은 현지 사업장이 자체 리스크 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3. 실제 발생하였거나 잠재적으로 발생가능한 부정적 영향에 대해 자사나 협력업체 및 기타 사업관계자의 관련성을 평가한다.

# 이행사항

1) 부정적 영향의 유발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하기 위하여 자사의 협력업체 및 기타 사업관계자, 이해관계자 등과 협의한다.

- 2) 부정적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나 권리당사자 또는 이들을 합법적으로 대표하는 자와 협의한다. 필요한 경우 내·외부로부터관련 전문 지식을 구한다.
- 3) 부정적 영향에 자사가 얼마나 관여되어 있는지 기업이 평가한 결과를 놓고 이해관계자나 권리당사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분쟁 해결 등 합법적 절차에 성실히 협력한다.
- 4. 실제 발생하였거나 잠재적으로 발생가능한 부정적 영향에 관한 정보를 활용, 심각성 및 가능성에 기초해 ESG 관련 리스크와 그 영향이 가장 엄중한 것부터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우선순위의 부여는 모든 부정적 영향을 일시에 해결할 수 없는 경우 유용하다. 부정적 영향은 가장 엄중한 것부터 순차적으로 해소해 나간다.

#### 이행사항

- 1) 실제 발생하였거나 잠재적으로 발생가능한 부정적 영향 중에서 최소한 어느 정도라도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것을 가려낸다(예. 협력업체와의 계약조건 갱신, 감사 중 누락됐던 리스크를 반영하기 위한 감사규정 개정 등).
- 2) 2 3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기업 관여도 평가 결과, ESG 이슈와 관련해 부정적 영향을 유발하거나 부정적 영향에 관여된 활동에 대해 시정조치의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 3) 부정적 영향에 협력업체 및 기타 사업관계자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 해당 업체가 관련 리스크의 규명·예방·완화를 위한 정책 및 절차를 얼마나 갖추고 있는지 평가한다.
- 4) 부정적 영향의 직접적 원인이 협력업체 및 기타 사업관계자의 기업 운영, 제품 또는 서비스에 있는 경우 해당하는 부정적 영향을 전부 해결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충분히 해결하기가 곤란한 경우 확인된 부정적 영향 또는 리스크의 심각성 및 가능성을 평가해 우선적으로 조치해야 할 이슈를 선별한다.
- 5) 우선순위 결정 시 사업관계자는 물론, 실제 또는 잠재적으로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 및 권리당사자와 협의한다. 필요한 경우 기업 내·외부로부터 관련 전문 지식을 구한다.

# ③ 부정적 영향의 중단, 예방 및 완화

1. ②-3에서 권고한 부정적 영향에 대한 기업 관여도 평가 결과에 기초하여 ESG 이슈에 부정적 영향을 유발하거나 부정적 영향에 관여된 활동을 중단한다. 잠재적으로 발생가능한 부정적 영향을 예방 또는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개발·시행한다.

#### 이행사항

1) 부정적 영향을 유발하였거나 부정적 영향에 관여된 활동을 중단하고, 향후 개발 방지를 위한 책임을 경영진에 할당한다.

- 2) 중단해야 할 행위 자체가 복잡하거나 운영·계약·법률상 문제로 중단이 곤란한 행위의 경우 기업 내·외부 법률자문을 통하거나 부정적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 및 권리당사자 등과 함께 관련 활동 중단을 위한 로드맵을 만든다.
- 3) 향후 부정적 영향의 예방 및 해결 방법에 관한 지침과 그 실행에 관한 자사의 정책을 업데이트한다.
- 4) 기업 내 관련 근로자 및 경영진을 대상으로 부정적 영향의 중단, 예방 및 완화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다.
- 5) 부정적 영향이 발생하기 전에 리스크를 찾아낼 수 있도록 리스크 평가 등 관리시스템을 보완한다.
- 6) 부정적 영향의 피해를 입었거나 잠재적 피해 가능성이 있는 이해 관계자 및 권리당사자 또는 이들 대표자와 협의 및 자문을 통해 부정적 영향의 중단, 예방 및 완화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고 그 계획을 이행한다.
- 7) 부정적 영향이 집단적인 이유 또는 누적된 원인에 의해 발생한 경우(특정 기업이 부정적 영향을 유발한 여러 주체 중 하나일 때), 가능하면 업종별 단체나 이니셔티브, 관계 정부 기관과의 협력 등을 통해 부정적 영향을 중단 또는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공동 모색한다.

- 8) 부정적 영향에 자사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 해당 활동에 대하여 중단 또는 예방 조치를 취하고, 남은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실행한다.
- 2. ②-4에서 정한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관계자의 기업 운영, 제품·서비스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ESG 리스크에 대해서는 부정적 영향을 예방·완화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한다. 사업관계자 리스크에 대한 적절한 대응으로는 ① 해당 업체의 리스크 완화노력이 진행되는 동안 지속적인 사업관계 유지, ② 해당 업체의리스크 완화노력이 진행되는 동안 일시적인 사업관계 중단, ③ 해당 업체의 리스크 완화노력이 실패하였거나 부정적 영향이심각해 리스크 완화가 불가능한 경우 사업관계 단절 등이 있을수 있다. 부정적 영향을 예방·완화하기 위한 계획에는 협력업체및 사업관계자에 대하여 자사가 기대하는 사항과 자사가 취할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담는다.

# 이행사항

- 1) 부정적 영향에 대한 예방·완화 계획의 수립, 실천, 모니터링 책임을 경영진에 할당한다.
- 2) 부정적 영향의 개선 정도를 정의·측정할 수 있는 질적·양적 지표를 활용하여 관련 사업관계자가 합리적 시한 내에 부정적 영향을 예방·완화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 협력하다.

- 3) 건전한 시장 관행을 고려하는 가운데 사업관계자가 부정적 영향을 실제 예방·완화할 수 있도록 최대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 4) 영향력이 미흡한 경우 경영진의 지원이나 거래 인센티브 등 사업 관계를 이용한 부가적 독려 수단을 고려한다. 단독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의 경우 업종별 단체를 통한 공동 대응 이나 정부 협조 등을 통해 집단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 5) 실제로 발생한 부정적 영향을 해소하고 미래 잠재적으로 발생 가능한 부정적 영향을 예방하기 위해 자사 정책이나 행동강령, 계약, 서면합의 등을 통해 기존 또는 신규 사업관계자에 대한 영향력을 구축한다.
- 6) 인권과 관련하여 부정적 영향을 유발하였거나 부정적 영향에 관여된 사업장은 그 부정적 영향을 받았거나 받을 가능성이 높은 권리당사자 또는 그 대표자와 협의해 적절한 시정조치계획을 수립・실천한다.
- 7) 부정적 영향 및 리스크를 예방·완화하기 위하여 관련 협력업체 및 사업관계자를 지원한다(교육, 설비합리화, 관리시스템 강화 등).
- 8) 부정적 영향을 예방·완화하기 위한 시도가 실패한 경우, 부정적 영향이 돌이키기 어렵거나 변화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 심각한 부정적 영향 또는 리스크가 감지되었음에도 그 영향을 유발한 주체가 즉각적인 예방·완화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최후 수단으로 협력업체 및 사업관계자와의 관계 단절을 고려한다.

- 9) 사업관계의 단절은 해당 협력업체 또는 사업관계자의 중요도, 계약 유지 또는 종료에 따른 법적 리스크, 현장에 미치는 영향, 사회·경제적으로 미칠 부정적 영향에 관하여 신뢰할 만한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
- 10) 사업관계를 유지하기로 결정한 경우 기업은 부정적 영향 및 리스크 완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설명하고, 사업관계 유지에 따른 평판과 재정적 · 법적 리스크를 파악할 수 있도록 준비하다.
- 11) 부정적 영향이 발생한 지역에 대해 정부 기관이 관련 법규를 집행·적용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행정 감독에 협조한다.

# ④ 이행상황 및 결과 추적

1. 사업관계자와 함께 부정적 영향의 파악, 예방, 완화 조치와 회복 조치 등 기업 실사 활동의 이행과 효과를 추적한다. 추적을 통해 얻은 교훈은 향후 해당 절차를 개선하는 데 활용한다.

# 이행사항

1) 내부 혹은 제3자의 검토 및 감사를 주기적으로 시행한 결과를 관련부서에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사에 대한 기업 내부의 책무, 활동, 목표의 이행 및 효과성을 관찰·추적한다.

- 2) 사업관계자에 대한 주기적인 평가를 통해 리스크 완화 조치의 추진 또는 부정적 영향의 실질적 예방·완화 여부를 검증한다.
- 3) 자사가 가입된 단체 및 업종별 이니셔티브가 본래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개별기업으로 하여금 사업과 관련한 부정적 영향을 파악, 예방, 완화하도록 지원할 것을 주기적으로 독려한다.
- 4) 과거 실사 과정에서 간과된 부정적 영향 또는 리스크를 판별해 향후 이를 포함하도록 한다.
- 5) 위 추적과정을 통해 습득한 교훈에 대해서는 그 피드백을 향후 기업 실사에 반영하여 절차 및 결과를 개선한다.

# 5 이해관계자 소통

1. 기업은 자사의 실사 정책과 절차는 물론 실제 발생하였거나 잠재 적으로 발생가능한 부정적 영향을 판별하고 해소하기 위해 취한 활동과 결과 등 관련 정보를 외부와 공유한다.

# 이행사항

1) 영업비밀, 경쟁 또는 보안 문제를 고려하는 가운데 사업보고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기타 적절한 형태의 정보 공시 등을 통해 자사의 실사 절차에 관한 정보를 공개한다.

- 2) 공개할 정보로는 자사의 ESG 경영 정책과 이를 관리시스템으로 반영하기 위해 취한 조치, 해당 기업이 식별한 중대 리스크 분야, 평가된 리스크의 우선순위와 결정 기준, 리스크에 대한 예방 · 완화 조치(예상 일정 포함), 이행 결과를 추적하기 위한 조치, 기업이 제공하는 구제수단이나 구제를 위해 협력하고 있는 사항 등을 포함한다.
- 3) 상기 정보는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자사 홈페이지 및 및 법령에 따른 웹사이트에 공표한다.
- 4) 인권과 관련하여 부정적 영향을 유발하였거나 부정적 영향에 관여된 경우에는 그 부정적 영향을 받았거나 잠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권리당사자와 시의적이고 접근가능한 방법으로 상기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 6 회복 조치의 제공 및 협력

1. 기업이 부정적 영향을 유발하였거나 부정적 영향에 관여된 경우에는 회복 조치 등을 통해 그 부정적 영향을 해소한다.

# 이행사항

1) 부정적 영향으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에 대해서는 그 부정적 영향의 중대성 및 규모에 비례한 회복 조치를 마련한다.

- 2) 회복 조치에 관해서는 법령이나 적용가능한 국제적 기준 등을 따른다. 마땅한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유사 사례의 회복 조치를 참고한다. 회복 조치는 당해 부정적 영향의 특징과 정도에 비례 해야 하며, 재발방지 조치와 함께 사과, 배상, 복권(해고 근로 자의 복직 등), 비금전적 보상(미래 원조 및 교육 프로그램 제 공 등), 처벌(범법행위자에 대한 해고) 등을 포함할 수 있다.
- 3) 인권과 관련하여 부정적 영향이 발생한 경우 피해를 입은 권리 당사자 및 그 대표자와 협의하여 회복 조치를 결정한다.
- 4) 제공한 절차와 결과에 이의를 제기한 자들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평가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 2. 기업은 부정적 영향의 피해를 입은 이해관계자 및 권리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고 해당 기업에 문제 해결을 청구할 수 있는 합법적 구제절차에 대비하거나 이에 협력한다. 피해 주장을 합법적인 구제절차에 회부하는 것은 기업이 부정적 영향을 유발하였거나 관여되어 있는지 여부를 밝히고, 기업이 제공하게 될 회복 조치의 성격과 수준에 관하여 의견 불일치를 해소하는 데 유용하다.

# 이행사항

1) 구체적 피해 주장이 제기된 경우 해당 기업은 법적·비법적 관련 절차에 성실히 협력한다. 실제로 발생한 부정적 영향이 형사적

또는 행정적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기업은 소추 또는 행정제재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각별히 유의한다.

- 2) 근로자 또는 제3자의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제도 및 고객불만신고제도(Operational-level Grievance Mechanism) 등을 구축한다. 동 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기반으로는 불만 해결 및 회복 조치를 위한 로드맵, 처리 시한, 피해자와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거나 당해 부정적 영향이 중대한 경우의 대응 절차, 동 제도의 적용 범위, 동 제도의 형식과 접근가능한 불만 해결 방식에 대한 이해관계자 협의, 동 제도 운영을 위한 인력충원 및 자원배분, 결과 추적 및 모니터링 등이 포함되도록 한다.
- 3) 법령 및 단체협약 등에 따라 고충처리제도를 두는 경우 근로자 대표 또는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그 절차를 수립한다.

# [첨부1] ESG 핵심지표 맵핑

냶	ᄺ	ISO 26000	MNE 기이드리인	GRI	WEF	귃연금	KCGS	RBA	EcoVadis
환경경영 체계	목적/전략	•	•	•	•	•	•	•	•
	괜사설	•	•	•		•	•		•
	얜						•		•
	컴플라이언스		•	•			•	•	•
	때	•	•	•	•	•	•	•	•
환경 <b>오</b> 염 예방	쉳	•		•	•	•	•	•	•
	화학물질	•	•			•	•	•	•
	기타		•						•
	사고예방	•	•	•			•	•	•
7101110	원부자재	•		•				•	•
지원(용 작가	수자원	•		•	•	•	•	•	•
절감	폐물	•	•	•		•	•	•	•
	에너지절감	•	•	•	•	•	•	•	•
에너지	재생에너지	•							
온일스	왿가스	•	•	•	•	•	•	•	•
생물다양성	생태계보전	•	•	•	•				•
<u> </u>	기술투자	•					•		
	- 1 <u>2 1 1</u> 친환경디자인	•				•	•		•
제품환경	양			•		•	•		
	제품안전	•	•	•	•	•	•		•
 인권	인권보호			•			•	•	
	근로조건	•		•		•	•	•	
노동관행	다양성	•	•	•	•		•	•	•
-000	 노동기본권			•	•	•	•	•	
	##KN					•	•		
안전보건	양					•			
	개인정보보호	•	•	•	•	•	•		
쉐에사	품질/안전								
	의견수렴						•		
 사회공헌	- 기년 1 B			•	•	•	•		
사보증인 기배규조	CEO 의지			•			•	•	•
	조직/시스템			-		•			
	아토운영			•		•	•	•	
	전법경영	•							
	<u> </u>			<del>-</del>			•	•	•
	<u>윤대경영</u> 정보공개	•			_ <u> </u>	•	•	•	
커뮤-MP년	<u> </u>	•	•	•	•		•	-	
공급망관리	공급망 재원	•	•	•		•	•	•	•

# [첨부2] 기업이 ESG 경영에서 갖추어야 할 핵심 정보 목록 (예시)

분야	정보 목록
· · · ·	<ul> <li>○ 사업장 환경경영시스템 인증 획득에 관한 정보</li> <li>○ 환경경영을 위한 전사 조직에 관한 정보</li> <li>○ 환경경영을 위한 실무추진 조직에 관한 정보</li> <li>○ 임직원 대상 환경교육 실적에 관한 정보</li> <li>○ 전사적 환경경영 실천을 위한 투자계획 수립에 관한 정보</li> </ul>
	<ul> <li>○ 환경방침 수립 및 공개 여부에 관한 정보</li> <li>○ 당해연도 환경경영 목표 수립 및 공개 여부에 관한 정보</li> <li>○ 당해연도 세부 추진계획의 수립 및 공개 여부에 관한 정보</li> <li>○ 당해연도 이행실적 및 공개 여부에 관한 정보</li> <li>○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 선정 등에 관한 정보</li> <li>○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활동에 관한 정보</li> <li>○ 온실가스 배출활동 관리(데이터 집계, 제3자 검증)에 관한 정보</li> </ul>
	<ul> <li>○ 에너지 사용량 절감 활동에 관한 정보</li> <li>○ 주요 대기오염 물질 관리에 관한 정보</li> <li>○ 주요 수질오염 물질 관리에 관한 정보</li> <li>○ 용수 사용량 절감 활동 및 실적에 관한 정보</li> <li>○ 용수 재이용량 실적에 관한 정보</li> <li>○ 원·부자재 사용량 절감 활동에 관한 정보</li> <li>○ 폐기물 배출량 저감 활동에 관한 정보</li> <li>○ 폐기물 처리 프로세스의 구축 여부에 관한 정보</li> </ul>
	<ul> <li>○ 녹색구매방침 수립 및 공개 여부에 관한 정보</li> <li>○ 친환경 제품·서비스 구매 실적(친환경 업무용차량 등)에 관한 정보</li> <li>○ 화학물질의 환경적 위험성 관리에 관한 정보</li> <li>○ 화학물질의 저장, 수송 및 관리 점검 주기에 관한 정보</li> <li>○ 협력업체 대상 환경경영 역량 강화 지원활동에 관한 정보</li> <li>○ 협력업체 대상 평가관리체계에 관한 정보</li> <li>○ 환경사고 대응체계 수립 및 대응훈련 실시에 관한 정보</li> <li>○ 산업관련 환경규제 관리체계 수립 및 공개 여부에 관한 정보</li> <li>○ 환경성과 평가체계 구축에 관한 정보</li> <li>○ 환경심사 수행 여부에 관한 정보</li> </ul>

- ㅇ 인권경영 선언 및 정책 공개 여부에 관한 정보
- ㅇ 근로자 인권침해 예방 프로그램 실시에 관한 정보
- ㅇ 근로자 인권침해 사례 신고제도(고충처리제도 등)에 관한 정보
- 인권영향평가 등 자발적 실사에 관한 정보
- ㅇ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에 관한 정보
- ㅇ 안전보건정책 수립 및 공개 여부에 관한 정보
- ㅇ 산업재해 관련 지표 공개 여부에 관한 정보
- ㅇ 산업안전보건 교육 실시에 관한 정보
- ㅇ 안전보건 리스크 평가 실시에 관한 정보
- ㅇ 산업안전보건 인증에 관한 정보
- ㅇ 노동조합 조직 및 가입률에 관한 정보
- ㅇ 남녀간 평균급여 수준에 관한 정보
- ㅇ 기간제 근로자 및 정규직 여성근로자 고용 현황에 관한 정보
- ㅇ 직급별 남녀 고용현황에 관한 정보
- ㅇ 장애여부, 국적, 인종 등 다양성 관련 고용 현황에 관한 정보
- ㅇ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에 관한 정보
- ㅇ 자발적 이직률 공개 여부에 관한 정보
- o 근로자 복리후생비에 관한 정보
- ㅇ 가족친화기업 인증 획득에 관한 정보
- ㅇ 근로자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정보
- 근로자 1인당 교육훈련비 수준에 관한 정보
- ㅇ 고객불만신고제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정보
- ㅇ 고객불만신고 개선 실적에 관한 정보
- ㅇ 개인정보보호 정책 수립 및 실시에 관한 정보
- ㅇ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및 관리조직에 관한 정보
- ㅇ 지역사회 상생발전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
- ㅇ 지역사회 현지 인재등용에 관한 정보
- 사회공헌활동에 관한 정보
- ㅇ 조세 납부에 관한 정보
- 임직원 대상 반부패·준법교육 실시 여부에 관한 정보
- 협력사에 대한 공정거래 원칙 수립 및 공개 여부에 관한 정보
- ㅇ 정보공개 정책 수립 및 범위 등에 관한 정보
- ㅇ 내부 공시정보관리에 관한 정보

사회 (S)

- ㅇ 기업지배구조헌장 수립 및 공개에 관한 정보
- 임직원 윤리규정 수립 및 공개에 관한 정보
- ㅇ 정기 주주총회 소집공고 및 통지일에 관한 정보
- ㅇ 정기 주주총회 소집 전 감사보고서 공시 여부에 관한 정보
- ㅇ 주주총회 결과 공시에 관한 정보
-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에 관한 정보
- ㅇ 등기임원 현황 및 지분에 관한 정보
- ㅇ 이사회 운영규정에 관한 정보
- ㅇ 이사회 내 위원회 운영규정에 관한 정보
- ㅇ 이사회 구성 등에 관한 정보
- 사외이사 겸직 현황에 관한 정보

지배구조

(G)

- 개별이사 이사회 참석률 및 활동내역에 관한 정보
- ㅇ 개별이사 평가절차에 관한 정보
- 내부 감사기구 운영규정에 관한 정보
- ㅇ 내부 감사기구 구성 등에 관한 정보
- ㅇ 외부감사인 선임에 관한 정보
- 내부통제정책(리스크관리, 준법경영, 회계관리 등)에 관한 정보
- ㅇ 주주 배당정책 수립 및 공개 여부에 관한 정보
- 임원(이사) 보수한도의 적정성(경영성과와 연계 여부)에 관한 정보
- 횡령, 배임, 부당지원, 사익편취 등 법령 위반 사실에 관한 정보
- ㅇ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수립 및 공개 여부에 관한 정보

105

<sup>※</sup> 규모, 업종, 비즈니스 모델 등에 따라 기업이 갖추어야 할 정보 목록은 상이할 수 있음.

# [참고문헌]

WEF, Measuring Stakeholder Capitalism(2020)

Recommendations of the 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2017)

UN, 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2006)

ISO, Guidance on Social Responsibility(2010)

GRI, Global Standards for Sustainability Reporting(2021)

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2012)

OECD, Due Diligence Guidance for Responsible Business Conduct(2018)

MSCI, ESG Rating Methodology(2020)

이사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국민연금기금 책임투자 방향 설명서(2021)

국민연금기금 ESG 평가지표(2021)

국민연금기금 연차보고서(2020)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활동 보고서(2019)

한국기업지배구조원, ESG 모범규준(2021)

경총, ESG 경영위원회 회보 제1~2호(2021)

경총,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시스템 강화를 위한 가이드북(2021)

한국거래소, ESG 정보공개 가이던스(2021)

삼정 KPMG, 'ESG의 부상, 기업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2021)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Business Roundtable 홈페이지

Sustainability Accounting Standards Board 홈페이지

Responsible Business Alliance 홈페이지

EcoVadis 홈페이지

현대자동차 홈페이지

SK이노베이션 홈페이지

LG에너지솔루션 홈페이지

포스코 홈페이지

LS전선 홈페이지

현대건설 홈페이지

# ESG 스타트 매뉴얼

2021년 12월 10일 인쇄 2021년 12월 14일 발간

발행인 장 경 호

편 집 인

강 왕 락 발 행 처 코스닥협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76

**2** 02-368-4500

www.kosdaqca.or.kr

인 쇄 처 이와이 기획

**2** 02-3273-7701

단 한국경영자총협회 ☑ 한국상장회사협의회 K□□□A□ 코스닥협회